



■ 연구보고서(수시) 2014-01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원종욱 · 백혜연 · 김태은 · 최요한

【책임연구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및 평가기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국민연금기금운용 증장기 정책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4-01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발행일 2014년 5월 31일
저자 원종욱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30-4 93330

발간사 <<

짧은 근로 생애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긴 노후생활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전 세계 국가의 고민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요 노후소득보장을 받고, 그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목표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 국민연금을 현재 수급하고 있는 현 노인세대와 앞으로 수급하게 될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았다.

본 보고서는 원종욱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백혜연 부연구위원, 김태은 연구원, 최요한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우해봉 연구위원, 신화연 부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2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	14
제4절 기초연금제도의 소개	17
제2장 해외 기초연금 사례	21
제1절 분류기준	23
제2절 OECD 주요국가의 사례	35
제3장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47
제1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49
제2절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69
제4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89
제1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91
제2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9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7

참고문헌 123

부록: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시 사용한 데이터와 산출 결과 125

표 목차

〈표 1- 1〉 공적노후소득보장률	16
〈표 1- 2〉 공적연금 적용 현황 (2011년 12월 기준)	17
〈표 1- 3〉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예상 재정소요액	19
〈표 2- 1〉 기여 및 소득자산조사와의 연계에 따른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 구분	25
〈표 2- 2〉 OECD 국가의 공적노후소득보장 구조	30
〈표 2- 3〉 OECD 국가의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 유형별 급여 수준 및 적용범위	33
〈표 3- 1〉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와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비교(2012년 기준 63세 이상)	50
〈표 3- 2〉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51
〈표 3- 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B값 통계	53
〈표 3- 4〉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을 위한 급여계수	55
〈표 3- 5〉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국 민연금	55
〈표 3- 6〉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소득대체율	56
〈표 3- 7〉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57
〈표 3- 8〉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	57
〈표 3- 9〉 소득분위별 평균소득(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B값 이용)	59
〈표 3-10〉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기초연금	61
〈표 3-11〉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평균 기초연금	62
〈표 3-12〉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별 수급자 수	63

〈표 3-13〉 출생코호트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64
〈표 3-14〉 가입기간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65
〈표 3-15〉 출생코호트별 공적연금의 수익비와 순이전액	67
〈표 3-16〉 가입기간별 공적연금의 수익비와 순이전액	68
〈표 3-17〉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대졸 이상 그룹)	70
〈표 3-18〉 출생코호트,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73
〈표 3-19〉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고졸 그룹)	76
〈표 3-2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대한 시나리오	77
〈표 3-21〉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고졸, 중층 그룹) ..	80
〈표 3-22〉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국민+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고졸, 중층 그룹)	88
〈표 3-23〉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평균 증가율	89
〈표 4- 1〉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의 응답자 구성	91
〈표 4- 2〉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및 의견 문항의 범주	92
〈표 4-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 94	
〈표 4- 4〉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95
〈표 4- 5〉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96
〈표 4- 6〉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98
〈표 4- 7〉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99
〈표 4- 8〉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01
〈표 4- 9〉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02
〈표 4-10〉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104
〈표 4-11〉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105

〈표 4-12〉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의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07

〈표 4-13〉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태도(문항7)의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08

〈표 4-14〉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10

〈표 4-15〉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11

〈표 4-16〉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13

〈표 4-17〉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114

〈표 4-18〉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와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의 독립성 검정 115

부표 목차

〈부표 1〉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그룹에 대한
 월급여 총액 통계 125

〈부표 2〉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의 교육수준 고졸 그룹에 대한
 월급여 총액 통계 126

〈부표 3〉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중졸 이하 그룹) 127

〈부표 4〉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대졸 이상 그룹)	128
--	-----

그림 목차

[그림 1- 1]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15
[그림 1- 2] 기초연금 예상 재정소요액 전망	19
[그림 2-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24
[그림 2- 2] OECD 국가의 최소노후생활보장제도 유형별 급여 수준 및 적용범위	34
[그림 3- 1] 출생 코호트별 평균 국민연금	60
[그림 3- 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60
[그림 3- 3]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교	63
[그림 3- 4]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대졸 이상 그룹)	72
[그림 3- 5] 소득계층별 취업률(대졸 이상 그룹)	72
[그림 3- 6]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비교	74
[그림 3- 7]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75
[그림 3- 8]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하층), 교육수준별(중졸 이하) 기초연금액 비교	81
[그림 3- 9]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중층), 교육수준별(중졸 이하) 기초연금액 비교	81
[그림 3-10]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상층), 교육수준별(중졸 이하) 기초연금액 비교	82
[그림 3-11]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하층), 교육수준별(고졸) 기초연금액 비교	82
[그림 3-12]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중층), 교육수준별(고졸) 기초연금액 비교	83
[그림 3-13]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상층),	

교육수준별(고졸) 기초연금액 비교	83
[그림 3-14]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하층), 교육수준별(대졸 이상) 기초연금액 비교	84
[그림 3-15]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중층), 교육수준별(대졸 이상) 기초연금액 비교	84
[그림 3-16]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상층), 교육수준별(대졸 이상) 기초연금액 비교	85
[그림 3-17]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86
[그림 3-18]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86
[그림 3-19] 다양한 기준연금액 시나리오 하에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민+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율(고졸, 중층 그룹) ..	87
[그림 3-20]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평균 증가율	89

Abstract <<

Analyzing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Korea is not alone in facing an aging challenge. Rising life spans and unaffordable pension pose similar concerns throughout the world. The aim of the Basic Pension is to ensure basic security for the old who are in the National Pension blind spot or receive unaffordable pens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on the current and future National Pension recipient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construct the Basic Pension program which would lead to considerable reduction of old age poverty and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 program. Finally, we thank many authors who took part in this proje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

□ 심각한 노인 빈곤 및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임(한국 47.2%, OECD 평균 12.8%).¹⁾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또한 상당히 낮음.

- 2012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
급자는 31.2%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대략 30만원 수준

□ 현 기초노령연금의 모호한 정체성 및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 문제

○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모호한 성격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역
할 정립과 유기적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초노령연금은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세대를 가로질러 지속되는 ‘항구적인’ 제도인지,

- 혹은 ‘공적연금’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인지 등 그 정체성과 관

1)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분배의 합리성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문제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설계된 관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 국민연금(소득재분배 급여)과 기초노령연금이 수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재분배 관련 형평성 문제 발생(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 또한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과 기초노령연금(지방자치단체)이 상이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관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 초래

2) 연구의 필요성

-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 노인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초연금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 가능 여부 평가 요구
 -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 생활 안정 효과 예상해 보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위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함.
 - 2012년 국민연금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및 다양한 변수들의 가정 설정
 -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연금 DB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통계치를 사용.
 - 2012년 국민연금통계 통계표 상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분포를 그대로 사용. 단, 각 B값 구간 내에서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 특례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적용, 가입기간 10년~20년 노령연금과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은 각각 가입기간을 균등분포로 가정
 - 국민연금 현 수급자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예상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증가, 기초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감소
 - 그러나,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감소폭 보다 국민연금의 상승폭이 더 크므로 두 연금의 총 합은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일수록 상승폭이 큼.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 또한 증가

6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2012년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소득(월급여액) 분포 가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범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부문 모든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로서 본 연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산출 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등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

○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각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 산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미래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보임.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에 대한 5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연금의 총 합에 대한 수급액 및 소득대체율 산출 비교

-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에서만 유일하게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소함.
-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교육수준·소득계층별 그룹의 소득대체율은 출생코호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3. 결론 및 시사점

-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할 때,
-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주요용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노후생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빈곤

제4절 기초연금제도 소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2010년 47.2%로 OECD국가(2010년 OECD 평균 12.8%) 중 최고 수준이다.²⁾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또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비록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게 설정된 관계로 심각한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인지 등 그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호한 성격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설계된 관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수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여 재분배 관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상이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관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초래하였다.

이러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과

2)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기초연금을 도입했던 선진국들의 다양한 연금체계 변화 모색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7월부터 도입될 기초연금으로 인한 현 노인 세대,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해 보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비교해 보고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기초연금의 수준과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 증가 수준을 예상해 보도록 한다.

현 세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노인 빈곤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며, 2013년에는 단독수급자의 경우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의 경우 매월 최고 154,900원을 지급받았다(보건복지부, 201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장현주(2013)는 2012년 제7차 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독거노인빈곤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구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성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23.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감소효과도 12.49%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을 사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재호·정주연(201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경상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총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는 못하였고,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경상소득과 총소득의 양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호·최옥금(2010)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기초노령연금의 영향은 어느 정도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서 급여의 효과는 빈곤계층이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분명한 영향을 끼쳤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수준이 매우 높다는 상황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성호·최옥금(2010)은 기초노령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는 노인빈곤가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서 차상위로 이동시키는 정도의 영향만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이래 불과 10여년만인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성장하였고,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도입 만 20년이 경과하여 완전노령연금수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적립식 재정방식의 설계로 제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계층이 다수 존재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급여수준의 하락을 초래하여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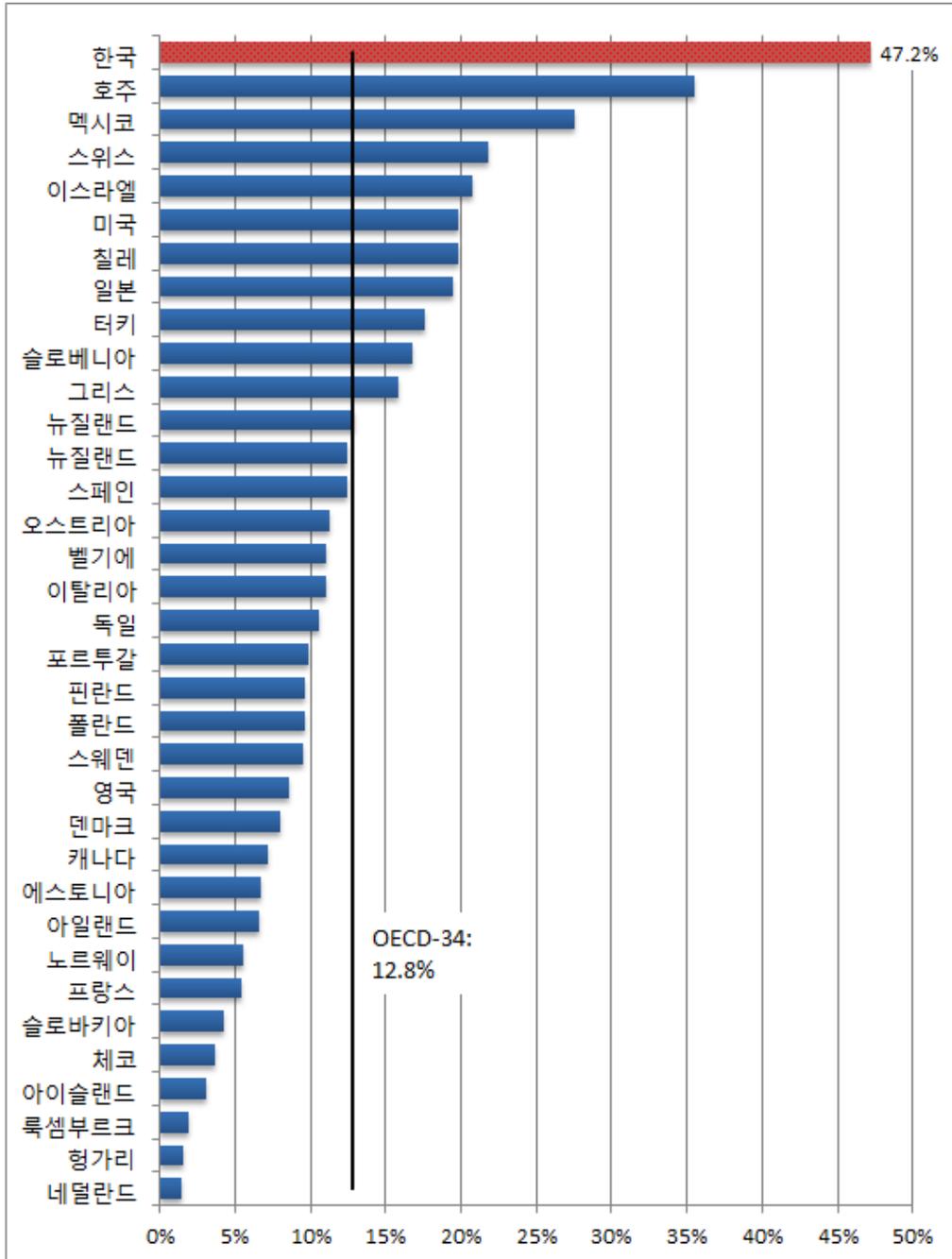
이러한 공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비기여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소요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노후소득보장”보다는 “보충적 소득 보완”의 형태로 축소되어 운영되었다(김태은, 2013).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7.2%로 OECD 평균 12.8%에 4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높은 노인빈곤율로 201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약 29%에 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우해봉(2012)은 현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율은 개인적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현 노인세대가 대체로 은퇴기에 진입한 혹은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 자체도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1-1]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¹⁾

(단위: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 %)



주: 노인빈곤율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 빈곤의 개념임.

자료: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표 1-1>과 같이 공적소득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낮은 급여수준은 수급권을 획득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표 1-1> 공적노후소득보장률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A)	5,069	5,268	5,506	5,701	
기초노령연금 (B)	2,884 (56.9)	3,610 (68.5)	3,712 (67.4)	3,796 (66.6)	
공적 연금	공적연금 계 (C)	1,291 (25.5)	1,454 (27.6)	1,652 (30)	1,846 (32.4)
	국민연금	1,103 (21.8)	1,246 (23.6)	1,428 (25.9)	1,606 (28.2)
	공무원연금	131 (2.6)	146 (2.7)	156 (2.8)	170 (3.0)
	사학연금	18 (0.3)	22 (0.4)	22 (0.4)	27 (0.5)
	군인연금	38 (0.8)	40 (0.7)	46 (0.8)	44 (0.8)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 (D)	400 (8.0)	717 (13.6)	818 (14.9)	908 (15.9)	
공적노후소득보장률 (B+C-D)/A	3,775 (74.4)	4,347 (82.5)	4,546 (82.6)	4,735 (83.1)	

자료: 복지부 내부자료(연금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참고자료), 2012. 7; 강성호(2012)에서 재인용

<표 1-2>의 공적연금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18~59세 인구 중 전체의 45.8%만이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수급권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머지 54.2%는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적용 사각지대는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획득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여 급여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성호 외, 2012).

심각한 노인빈문문제의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방안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표 1-2〉 공적연금 적용 현황 (2011년 12월 기준)

18~59세 총인구 32,793천명 (100.0%)					
경제활동인구 22,182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0,611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959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1,223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9,823천명			
		납부예외자 4,900천명	소득신고자 14,923천명		특수지역연금 1,404천명
			장기체납자 1,303천명	보험료 납부자 13,620천명	
32.4%	2.9%	14.9%	4.0%	41.5%	4.3%
잠재적 사각지대 17,768천명 (54.2%)				잠재적 수급권자 15,025천명 (45.8%)	

자료: 강성호·권혁진·조영은(201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제4절 기초연금제도의 소개

기초연금은 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상당히 적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도입되게 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세대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노인 전체로 할

것인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고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된다. 기초연금액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수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두 배 가량의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노인빈곤감소 및 노인소득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하위 70%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87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1,392,000원이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되며 그 값의 크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 된다. 또한 기초연금액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와 후세대 부담을 경감시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당초 정부안 그리고 최종 기초연금법에 의한 재정소요액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수급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 인한

2015년 예상 재정소요액은 10.33조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계속 유지된다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 재정소요액 6.12조원 보다 약 4.21조원이 더 투입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의 표와 그림은 기초연금의 예상 재정소요액 전망치이다.

〈표 1-3〉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예상 재정소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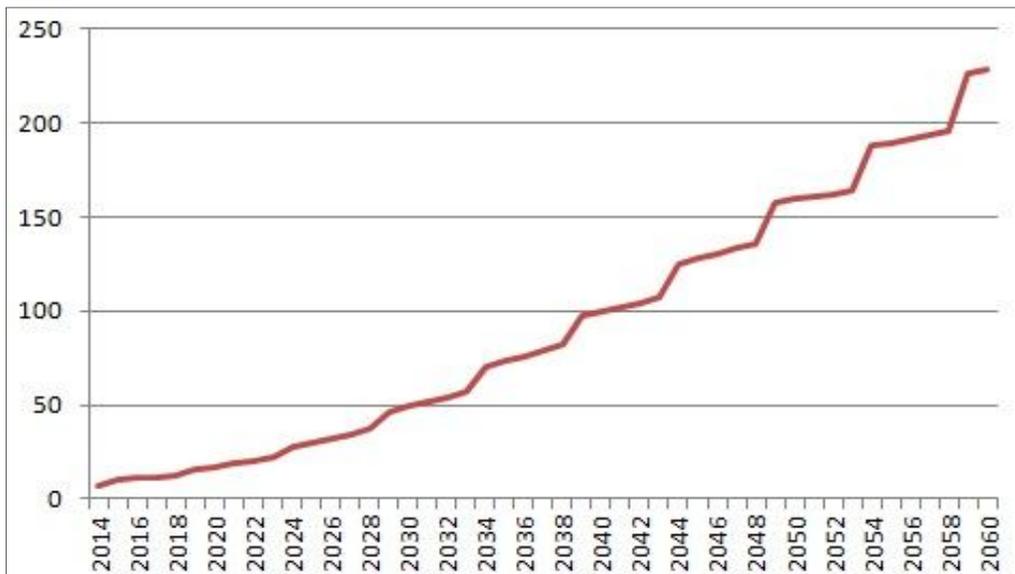
(단위: 조원)

연도	2015	2016	2017	2040	2060
기초노령연금	6.12	7.14	8.38	111.63	263.77
당초 정부안	10.25	10.86	11.44	99.83	227.98
기초연금	10.33	10.95	11.54	100.03	228.8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1-2] 기초연금 예상 재정소요액 전망³⁾

(단위: 조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3) 정부안은 물가상승률+5년마다 보정, 그 외는 A값 상승률로 인상

20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본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OECD 주요국가의 사례를 검토하고(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제도로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근로자 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들을 기준으로 두 제도에 의한 수급액 산출 및 새로운 기초연금제도로 인한 노후소득 안정효과를 비교하였다(3장).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4장)과 결론 및 시사점(5장)을 정리하였다.



제2장

해외 기초연금 사례

제1절 기초연금제도의 유형

제2절 OECD 주요국가의 사례

2

해외 기초연금 사례 <<

제1절 분류기준

1.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모형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제도는 노후 보장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반적인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정책 환경에 따라 적용대상, 수급자격, 급여수준,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의 적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유호선, 2013).

각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부조, 공적연금의 공적제도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수당 및 복지급여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이 보충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1층제도로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2층제도로서 퇴직(연)금, 3층제도로서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2-1] 참조).

2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그림 2-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	
1층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 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공무원·군인·교직원	피용자	자영자

주: 1) 2014년 7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 시행

2.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최소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급여의 수급조건, 대상 및 수준,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방식은 차이가 있다. 노후최소소득 보장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일반적인 분류는 <표 2-1>과 같이 급여수급의 조건 및 수준이 과거의 기여이력(contribution history)과 소득자산조사(means test)에 연계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이러한 준거는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mode of access)을 세부적으로 보여 주는 장점이 있다(우해봉, 2012).

기여(contribution)와 소득자산조사(means test) 여부를 기준으로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기여를 하지 않고 소득자산 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방식, 기여와 연계되지 않았으나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방식, 기여를 바탕으로 하고 소득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방식, 기여와 소득자산조사를 동시에 요구하는 사회보험보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⁴⁾

〈표 2-1〉 기여 및 소득자산조사와의 연계에 따른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 구분

구분		기여와의 연계	
		비기여	기여
소득자산 조사	비조사	사회수당방식	사회보험방식
	조사	공공부조방식	사회보험보완방식

자료: 김태성·김진수(2007)의 p.23의 그림을 재구성

가. 비기여/비조사

사회수당(social allowance)방식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인구학적인 일정 조건만 갖추면 기여와 소득자산조사에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을 획득하게 된다. 권리로서의 급여(사회권: social right)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며, 기여자와 수급자 간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지출과 낮은 소득재분배효과 등의 문제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온 국가들에서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비기여 방식의 정액연금과 같은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이 이에 해당하며, 일정 연령 도달시 기여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연금으로 데모그란트(Demogrant)로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거주요건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진다.

나. 비기여/조사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는 빈곤문제의 대응을 위해 도입된 사회안전망으로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사람

4) 기여와의 연계 및 소득자산조사 실시여부를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는 김태성·김진수(2007)을 참고하였음.

들을 대상으로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집중적인 급여를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성이 높다. 그러나 근로유인저하, 도덕적 해이, 수급자의 낙인효과(stigma), 수급자와 납세자의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공공부조는 모든 인구집단을 포괄하는 일반형 공공부조(general social assistance)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범주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공공부조(categorical social assistance)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형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범주형 공공부조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다. 기여/비조사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가입 및 기여의 강제를 기반으로 보험원리를 통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대상과 급여지출이 가장 큰 제도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risk)에 대비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각출(보험료)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제도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기여를 분담하기도 한다. 공공부조가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예방적(사전적) 급여의 제공을 통해 빈곤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김태성·김진수, 2007). 주로 노령·장애·사망·질병·실업 등 전통적 사회위험(social risk)에 대응한다.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베버리지형의 정액의 균등급여(flat-rate pension)가 이에 해당한다. 베버리지형 제도는 균등각출균등

급여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저 수준의 기초보장(basic security)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하고, 구빈법적 잔재인 공공부조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이용하, 2011).⁵⁾ 이 경우 재원 조달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준조세(사회보험료)의 성격을 띤 기여금을 통해 이루어진다(우해봉, 2012).

라. 기여/조사

사회보장제도에서 기여와 연계되어 운영되면서 동시에 소득자산조사를 거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단일제도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일부로서 도입되거나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공적연금에서 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일정수준까지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연금(minimum pension)제도가 대표적이며, 연금에 가입하여 수급권을 확보하였으나 가입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연금수령액이 연금의 최저수준 이하일 경우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하게 된다.⁶⁾

5)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은 대체로 소득비례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노령이나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함으로써 은퇴이전 혹은 장애 발생 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consumption smoothing) 지위유지(status maintenance)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우해봉, 2012).

초기적 발전 단계에서는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의 유형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6-70년대를 기점으로 두 방식간 보편성과 적절성의 상호보완적인 수렴(비스마르크형에서는 기여와 연금 수급권의 연계성 완화, 베버리지형에서는 소득비례연금의 추가적 도입을 통한 급여수준 인상)이 이루어졌음(이용하, 2011).

6) 연금의 최저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연금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로 활용됨(김태성·김진수, 2007).

3. OECD의 기초연금제도 분류⁷⁾

가. 기본구조

OECD에서는 구분하고 있는 공적노후소득보장 구조는 3층 연금인 자발적인 사적연금을 제외했을 때 일반적으로 <표 2-2>과 같이 기본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1층 연금과 일반적으로 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소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층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OECD, 2013).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는 선별적연금(targeted pension), 최저연금(minimum pension), 기초연금(basic pension)이 포함되며, 소비보전을 위한 제도는 소득비례연금(earning-related pension)이 해당한다. 선별적연금(targeted pension)은 고령인구를 위한 별도의 자산조사기반 제도로 기여와 연계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최저연금(minimum pension)은 소득비례 연금제도 내에 포함되어 최소한의 연금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기초연금(basic pension)은 적용기간 또는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소비보전을 위한 소득비례 연금은 소득과 관련된 일체의 공적제도를 지칭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방식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최영준김진욱(2012)은 각 방식의 차이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선별적연금과 최저연금의 차이는 최저연금의 1층 연금은 소득비례방식인 2층 연금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반면, 선별적 연금은 노인빈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⁹⁾

7) OECD의 기초연금제도 분류는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의 제3장 ‘연금제도의 설계’를 참고하였음.

8) 전통적인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제도 뿐만 아니라 명목 계좌(notional accounts) 및 포인트 제도(points schemes)도 포함함.

다음으로 선별적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선별적연금 방식의 1층 연금이 빈곤한 노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기준의 소득 이상을 가진 노인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을 일컫는데 반해,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거주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거나 영국이나 일본처럼 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일컫는다.¹⁰⁾

이러한 기준들은 여전히 모호성을 남긴다. 한국의 경우나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경우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연금에 가깝긴 하지만, 빈곤층을 특정하기 보다는 부유층을 제외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활용하고 있다.¹¹⁾ 이러한 이유에서 자료의 출처에 따라 선별적연금(targeted pension) 또는 기초연금(basic pension) 방식으로 혼재되어 분류되기도 한다.

OECD(2013)는 한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표 2-2>과 같이 선별적연금(targeted pension)과 기초연금(basic pension)¹²⁾ 그리고 DB형 소득비례연금(earning-related pens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선별적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해당하며, 기초연금(basic pension)은 국민연금 급여중 가입자 전체의 평균과 관련된 A값에 해당하는 급여,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중 가입자 개인의 기여와 관련된 B값에 해당하는 급여가 해당한다.¹³⁾

9) 실제로 최저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두터운 2층 소득비례연금을 가지고 있음(최영준·김진욱, 2012).

10) 영국이나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최종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선별적연금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며, 스웨덴과 같이 기초방식을 최근 선별적연금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한 사례도 있음(최영준·김진욱, 2012).

11) Evelyn Huber는 이러한 방식을 기초보편주의(basic universalism)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음(Overbye, 1997; Whiteside, 2007; 최영준·김진욱(2012)에서 재인용).

12) 한국의 경우 기초연금(basic pension)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도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OECD, 2013)

13) 국민연금의 급여는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의해 산출되는 A값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인 B값에 의해 산출됨.

30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표 2-2〉 OECD 국가의 공적노후소득보장 구조

국가	기본소득보장			소비보전
	선별적연금 (targeted)	기초연금 (basic)	최저연금 (minimum)	소득비례연금 ¹⁾ (earning-related)
호주	○			
오스트리아				DB
벨기에	○		○	DB
캐나다	○	○		DB
칠레	○		○	
체코		○	○	DB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Points
핀란드			○	DB
프랑스			○	DB+points
독일	○			Points
그리스			○	DB
헝가리				DB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NDC
일본		○		DB
한국 ²⁾	○	○		DB
룩셈부르크	○	○	○	DB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NDC
폴란드			○	NDC
포르투갈			○	DB
슬로바키아			○	Points
슬로베니아			○	DB
스페인			○	DB
스웨덴			○	NDC
스위스	○		○	DB
터키			○	DB
영국	○	○	○	DB
미국				DB

주: 1) 소득비례연금에서 DB(defined-benefit)는 확정급여형; DC(defined-contribution)는 확정기여형; point(points schemes)는 포인트 제도; NDC(notional accounts)는 명목 계좌를 의미

2) 한국은 기초연금 도입 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기준한 분류임.

자료: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나. 적용 범위 및 급여 수준

개별국가에 존재하는 다수의 제도 때문에 급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비교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들 제도상의 급여가 부가적 연금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들 간에 일정한 대체관계가 있다(OECD, 201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OECD(2013)은 공적노후보장제도의 국가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급여수준을 상대가치와 절대가치로 구분하고, 적용범위를 함께 제시하였다(〈표 2-3〉 참조).

OECD 국가의 기초연금의 평균 급여는 평균근로자소득(average worker earnings)의 18.4%에 해당하는 반면 선별적연금은 21.7%, 최저연금의 경우 24.6% 수준이다. 적용범위는 전체 수급자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며, 약 1/3이 평균적으로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¹⁴⁾

급여수준에서 비기여형 급여는 절대적 최저 안전망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최저 기여형 급여는 20세부터 표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매년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값으로 저소득 완전경력 근로자의 최저 소득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개 국가에서 비기여형 급여만 존재하고, 13개 국가는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비기여형 급여만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거주조건(residency-tested)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랜드는 수급액이 기초급여와 자산조사적 급여가 혼합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부조를 포함한 자산조사형 제도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13개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에는 사회안전망 급여, 고소득층

14) 적용인구는 국가별 제도의 복잡성으로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으며, 자료의 제약으로 전체 국가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음.

에는 기여형 최저연금이 존재한다. 아일랜드에서는 기여형 최저연금의 급여가 자산조사형 연금 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는 기여형 최저연금이 안전망 소득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비기여형 급여는 전체 경제 평균 소득의 22.9% 수준인 반면 기여형 급여는 28.2% 수준이다.

다음으로 적용범위를 살펴보면¹⁵⁾ 그리스의 경우 노인의 약 60%가 기여형 최저연금을 수급하며 그 외 19%가 안전망 급여를 받는데 포르투갈의 경우 두 제도 모두 그 비율이 약간 낮다. 호주는 거의 80%가 자산조사적 제도로부터 최소한 얼마간의 급여를 수급하며 덴마크는 거의 90%가 수급하고 있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최저 기여형 급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은퇴자의 37-47%가 수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안전망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2% 미만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1이 평균적으로 기초, 선별적 또는 최저 연금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여의 상대적 가치는 낮았으나 적용범위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급여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상당수의 노인계층을 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급여 수준도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 자료는 비 기여형 안전망 급여와 기여형 최저연금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음.

〈표 2-3〉 OECD 국가의 노후최소소득보장제도 유형별 급여 수준 및 적용범위

국가	급여의 상대 가치 (평균 소득의 %)			절대 가치 ¹⁾ (US\$, 구매력평가지수, 연간)			적용범위 (65세이상 수급자 %)	
	기초	목표	최저	기초	목표	최저	목표	최저
	호주		28.6			13,761		78
오스트리아		27.9			13,549		11	
벨기에		25.3	28.3		13,738	15,367	5	11
캐나다	13.9	18.8		5,212	7,068		34	
칠레	15.5	50.5		2,740	8,908		56	
체코	9.1		12.1	2,009		2,690		n.a.
덴마크	17.5	18.1		8,805	9,144		88	
에스토니아	13.2	14.7		2,639	2,944		6	
핀란드			20.6			9,255		47
프랑스		25.4	22.5		10,871	9,615	4	37
독일		18.9			10,712		2	
그리스		13.7	36.4		4,034	10,673	19	60
헝가리			12.4			2,684		<1
아이슬란드	6.5	20.4		2,846	8,974		n.a.	
아일랜드	36.7	34.9		14,399	13,692		17	
이스라엘	14.8	28.1		4,456	8,453		25	
이탈리아		21.6	19.3		8,135	7,262	5	32
일본	16.4	20.3		7,478	9,221		2	
한국 ²⁾		2.9			1,311		67	
룩셈부르크	10.2	30.8	38.9	5,680	17,130	21,650	1	29
멕시코			27.7			3,269		n.a.
네덜란드	29.5			16,288				
뉴질랜드	40.6			14,029				
노르웨이			31.5			18,005		22
폴란드		14.7	24.6		3,088	5,174	12	n.a.
포르투갈		17.4	33.8		4,433	8,600	17	59
슬로바키아		22.2			4,195		3	
슬로베니아		31.1	13.2		8,775	3,764	17	2
스페인		19.6	33.9		7,169	12,404	6	28
스웨덴		14.8	24.2		6,947	10,562	1	42
스위스		21.9	16.0		13,422	9,807	12	n.a.
터키		5.2	36.8		1,361	9,616	-22	-
영국	15.6	19.9	10.2	7,942	10,152	5,195	27	n.a.
미국		17.6			8,37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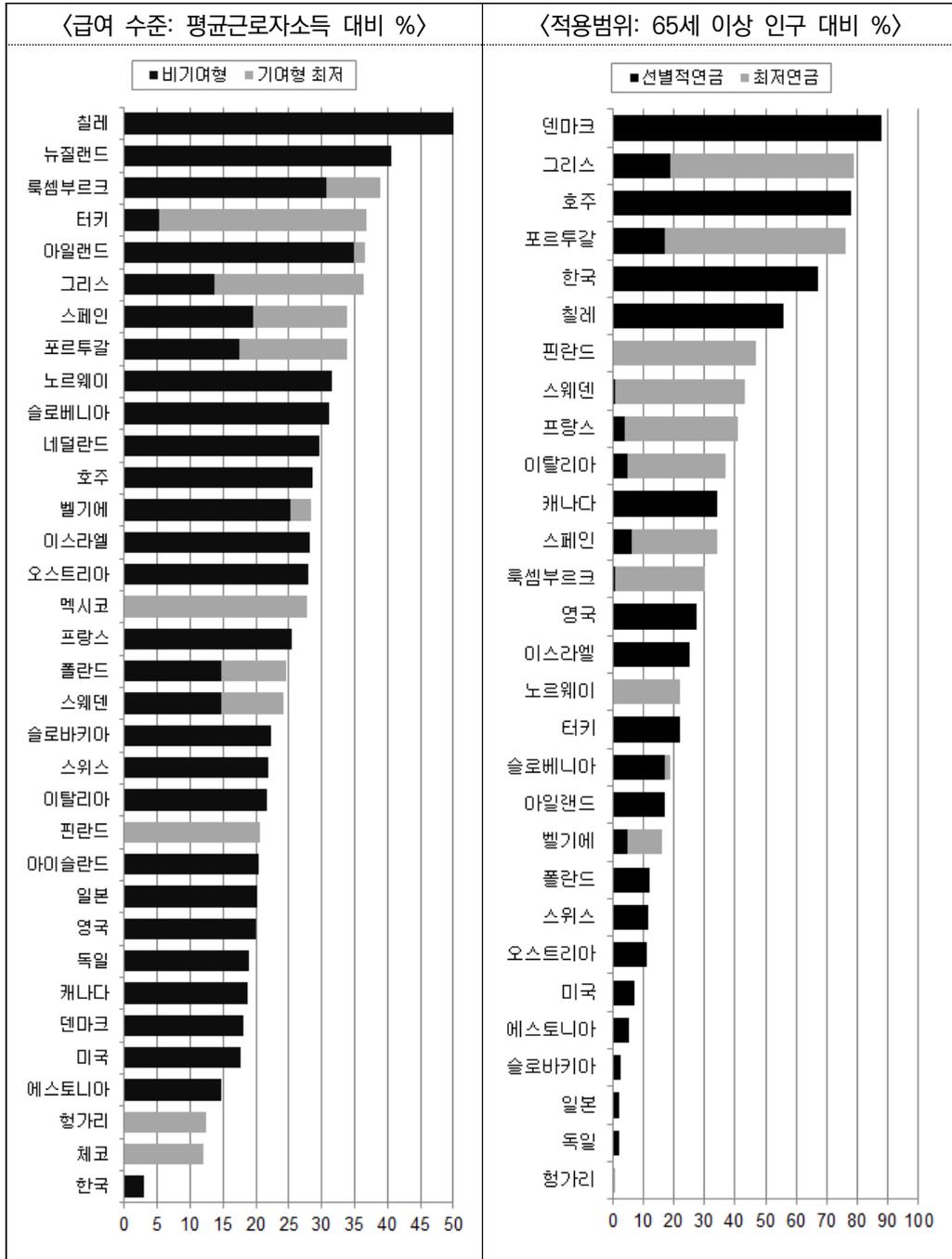
주: 1) 절대가치는 국가간 비교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비수준이 반영된 구매력평가지수 환율(OECD National Account의 PPPs and exchange rates)를 적용하여 USD로 환산하였음.

2) 한국의 자료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3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그림 2-2] OECD 국가의 최소노후생활보장제도 유형별 급여 수준 및 적용범위



자료: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제2절 OECD 주요국가의 사례¹⁶⁾¹⁷⁾

1. 호주

가. 개요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국고로 조달되는 자산조사 기반의 노령연금(Age Pension), 고용주 부담의 강제가입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에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및 기타 개인저축(other private savings)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호주의 노령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노후를 대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노후소득보장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노후 저축을 보완해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득 조사와 자산 조사를 사용해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정한다. 기존에 주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1908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노령연금(Age Pension)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조사를 이용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

16) 본 절의 사례는 'OECD(2013). Pension at a Glance'의 국가별 현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정리하였고, 우해봉(2012)의 연구를 상당부분 참고하였음.

* 우해봉(2012)은 OECD 국가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최근까지의 동향을 해외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17) 해외 사례 검토시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자국통화로 제시된 금액은 국가간 비교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비수준이 반영된 구매력평가지수 환율(OECD National Account의 PPPs and exchange rates)를 적용하여 USD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괄호()로 병기하였음.

는 목적으로 소득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속성이 있다. OECD에서는 ‘선별적연금제도’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5년 연속 거주포함)의 거주 기간이 요구된다. 노령연금의 급여는 연 2회 조정되는데 급여는 격주로 지급된다.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연금의 최대 정액요율은 2주에 AUD 772(\$505)였는데 2013년 3월에는 AUD 808 (\$529)로 인상되었다(소수 점 이하 반올림). 이는 연 평균 최대 AUD 21,018 (\$13,761)에 해당한다.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외에도 소득자산조사 요건(시각장애인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이 “공제 구간(free area)”이라는 기준선을 초과하면 감액된다. 일반적으로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AUD 1에 대해 40센트(부부의 경우 20센트)씩 감액되며, 만일 연간 소득이 개인의 경우 AUD 36,991.509, 부부는 AUD 63,414 (개인 \$24,219, 부부 \$41,517)를 초과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조정되며, 2010-12년 금액은 상반기에 AUD 150 (\$98), 하반기에 AUD 152 (\$100)이었다(격주 산정).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자산의 경우 기준선을 초과하는 자산의 AUD 1,000 (\$655)에 대해 주당 AUD 1.5 (\$1.0)만큼 감액된다. 전체 연금수급자의 약 41%가 소득자산조사(means test) 결과로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59%정도만이 완전연금을 지급하고 있다.¹⁸⁾

18) 소득자산조사(means test)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집단 중 69%는 소득조사로 인해 연금액이 삭감되었으며, 31%는 자산조사(asset test)로 삭감되었음.

호주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health), 주거비보조(rent assistance), 의약품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기타 생활비 지원(other living expenses) 등 포괄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제도 개혁 및 최근 동향

호주정부는 2009년 9월 연금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을 시행하였다. 연금개혁의 주요특징은 물가연동의 강화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이다.

먼저 물가연동의 강화는 연금인상지수를 개선한 점이다. ‘연금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PBLCI: 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라는 새로운 생활비 지표를 도입하여 연금수급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변동을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령 연금의 가치는 CPI(소비자물가지수)와 PBLCI(연금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에 의해 측정된 물가 상승 움직임에 맞춰 증가한다. 국민생활수준의 변화에 연동된 연금의 수준은 독신수급자의 경우 근로자평균임금 대비 25%에서 27%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환산액 기준 41.8%로 향상시켰다.¹⁹⁾

그리고 노령 연금수급자의 근로 인센티브 향상을 위해 근로 소득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Work Bonus 제도도 도입되었다. 연금보너스 제도(pension bonus scheme)는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노령 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경우에 일시금 형태의 비과세의 인센티브를 제공

19) 과거 호주의 노령연금의 목표액이 남성 전체 평균 주급(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 MTAW)의 25% 수준이었지만, 급여 수준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평균소득의 27.7%로 상향 조정되었음(부부의 경우 41.8%). 필요시 추가 인상을 통해 노령 연금의 가치가 국가가 정의한 MTAW(OECD 분석에서 사용된 측정 소득과 약간 다름)의 41.8%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함(OECD, 2012).

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연금개혁의 또 다른 내용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도입되었다. 자산조사가 엄격해졌으며, 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65세에서(여성은 2014년까지 조정)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 덴마크

가. 개요

덴마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보편적 국가연금(Folkepension), 자산조사적 부가연금(supplerende pensionsydelse: ældrecheck), 개인의 기여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시장 보충연금(ATP: Arbejdsmarkedets Tillægspension), 그리고 노사단체협상에 의한 강제적(전일 근로자의 대략 90%)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최소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연금(Folkepension)이 중심이 되며, 기존의 국가연금에 연계되어 지급되는 부가연금(supplerende pensionsydelse 혹은 ældrecheck)이 2003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연금은 기초급여(grundbeløb)와 이를 보완하는 보충급여(pensionstillæg)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급여는 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급여의 수급 및 수준이 결정되고 기초소득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보충급여는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기초급여에 추가적인 급여로 급여를 제공한

20) 과거 저축의 증대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설계된 SP(Den Særlige Pensionsopsparing)는 2010년 4월 30일로 종료되었음(SP에 대한 기여는 2004년 이후 중지).

다. 부가연금은 엄격한 자산조사에 기초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저축이 없는 극빈층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연금의 기초급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조세로 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²¹⁾ 한편 국가연금의 보충급여(pensionstillæg)와 부가연금(ældrecheck)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거치고, 조세로 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범주형 공공부조방식에 가깝다. OECD에서는 국가연금의 기초급여를 ‘기초연금’, 국가연금의 보충급여와 부가연금은 ‘선별적연금’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덴마크의 국가연금(Folkepension)은 15세에서 65세까지 최소 3년의 거주기간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연금 수급 전 5년을 포함하여 최소 10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초급여의 경우 개인과 부부(동거 포함) 구별 없이 연금 수급 이전 덴마크에서 최소 40년 이상 거주 시 급여를 전액 수급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40년 미만 시 1년 당 완전연금의 2.5%씩 감액된다. 기초급여의 완전연금액은 2012년을 기준으로 매월 DKK 5,713, 연간 DKK 68,556 (월 \$734, 연간 \$8,805)가 지급되며, 평균소득의 약 17% 수준이다. 급여는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조사(earnings test)를 통해 조정되는데 근로소득이 연간 DKK 291,200(\$37,401)(평균근로소득의 약 75%)를 초과할 경우 감액된다. 이때의 감액은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0%

21) 덴마크 국가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소득조사를 거치지만 급여의 수급자격 결정 조건이 아닌 급여의 수준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소득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비율로 이루어진다.

보충급여는 기초급여에 비해 보다 엄격한 소득자산조사가 실시되며, 실제 금액은 공적 연금을 제외한 개인 소득전체에 대해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APT 및 기업연금 포함). 만일 소득이 개인의 경우 DKK 64,300, 부부의 경우 DKK 128,900 (개인 \$826, 부부 \$16,556)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는 초과된 소득의 30.9%만큼 줄어들게 된다(다만, 수급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을 경우 16%를 감액). 완전수급자의 경우 개인의 경우 월 DKK 5,933, 연간 DKK 71,196 (월 \$762, 연간 \$9,144) 이고 부부의 경우 월 DKK 2,868, 연간 DKK 34,416 (월 \$368, 연간 \$4,420)을 수급한다.

한편 부가연금은 국가연금(Folkepension)에 연계되어 추가로 지급되며,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연 1회 DKK 11,200 (\$1,439)의 급여가 지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저축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최대 현금 저축액은 DKK 77,700 (\$9,980)).

전체 공적 연금의 급여는 직전 2년의 임금 상승 지수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2%를 초과하면 초과 증가분의 최대 0.3%가 사회지출 적립금으로 배정된다. 따라서 연금과 기타 사회적 급여의 연동은 임금 증가분에서 적립금에 충당된 금액만큼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 제도 개혁 및 최근 동향

덴마크에서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령층의 노동 시장 이탈을 유예하고,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었고, 근로 소득에 대한 특별 세금공제가

도입되었다.

덴마크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5세이나 2019-22년에 67세까지 점증적인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2008년 7월부터 노령 연금 제도의 연금 수급자는 연간 최대 DKK 30,000 (\$3,853)의 근로 소득을 기초연금 및 선별적 연금제도의 급여계산시 차감하는 특별 세금공제가 도입되었다.

3. 영국

가. 개요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정액 급여의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 BSP)과 소득비례연금인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 SSP)의 두 개 층(tier)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최소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기초국가연금(BSP, Basic State Pension), 극빈층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소득연계 보충급여인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비기여방식의 고령자연금(The Over 80 Pension)이 있다.

영국은 베버리지형 공적연금을 구축한 대표적인 국가로 가입자의 기여를 통해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구축하였으며, 2층의 소득비례연금의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인상하였다.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이 없거나 연금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

22) 기존의 법정소득비례연금(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은 2002년에 도입된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 SSP)으로 점진적으로 대체 중임. 제2국가연금은 강제적용이지만 기업연금, 스테이크홀더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이 면제되며, 2030년까지 소득비례연금에서 정액 급여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은 경우 일반 공공부조(Income Support)를 통해 보호되었으나 현재는 연금 크레딧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였다.²³⁾ 마지막으로 고령자연금은 80세 이상의 기초국가연금 수급자 중 급여액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조건부기초연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국가연금(BSP)은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방식이며, 연금 크레딧 제도는 조세로 재원이 충당되며, 소득자 산조사를 거치고, 노령층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범주형 공공부조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비기여방식의 고령자연금(The Over 80 Pension)은 80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수당방식에 해당한다. OECD에서는 기초국가연금과 고령자연금은 ‘기초연금’, 연금 크레딧은 ‘선별적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먼저 기초국가연금은 30년의 기여(크레딧 포함)를 조건으로 65세부터 완전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여성의 경우 현재 60세에서 2020년까지 65세로 조정). 완전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소 1년의 보험료 납부나 크레딧을 인정받을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된 정액 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급여는 개인은 주당 최대 GBP 107.45 (\$152.74)로 평균 소득의 약 1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연금 크레딧 제도는 저소득층 인구를 위한 비과세 급여로 매

23) 1999년 이전까지는 무연금 및 저연금 노인은 일반 공공부조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1999-2002년에는 MIG(Minimum Income Guarantee), 2003년부터는 연금 크레딧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

주 지급되며, 연금수급자 전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 크레딧은 소득비례형 급여이며, 국가 보험(National Insurance)의 기여금에 기초하지 않는다. 연금 크레딧에는 보장 크레딧(Guarantee Credit)과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보장 크레딧은 자격연령²⁴⁾에 도달하고 소득이 최저 기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급여는 2011/12년을 기준으로 개인은 GBP 137.35, 부부는 GBP 209.70 (개인 \$195.24, 부부 \$298.08) 수준이다.²⁵⁾

저축 크레딧은 비교적 소액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급하는 추가 금액이다. 이것은 유효 급여 지급율을 이전의 100%에서 40%로 인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소득(보장 크레딧 제외)이 보장 크레딧 최저 보장수준 미만이고, 저축 크레딧 기준선(2011/12년 개인 GBP 103.13, 부부 GBP 164.55 (개인 \$146.6, 부부 \$233.9))을 초과할 경우 실제 소득²⁶⁾과 저축급여 기준선 간 차액의 60%를 수급한다(상한선은 개인 GBP 20.52, 부부 GBP 27.09 (개인 \$29.17, 부부 \$38.51)). 소득이 보장 크레딧 최저 보장액을 초과하는 경우(즉, 보장크레딧 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 최대 저축 크레딧은 보장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분의 40%만큼 감액된다.

마지막으로 비기여방식의 고령자연금(The Over 80 Pension)은 80세 이상으로 국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완전연금의 60% 미만을 수급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고령자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60세 이후 임의의

24) 연금 크레딧의 자격연령은 여성의 공적연금수급연령과 동일하게 65세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이후 공적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라 전체 자격연령이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25) 보장 크레딧의 급여수준은 중증 장애인, 돌봄 책임이나 특정 주거 비용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음.

26) 국가연금, 기타 연금, 대부분의 사회보장 급여, GBP10,000 이상의 저축과 투자, 소득을 포함

20년(연속된 기간) 동안 최소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2/2013을 기준으로 주당 GBP 64.4 (\$93)에서 기초국가연금 급여를 차감한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 수준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다. 제도 개혁 및 최근 동향

영국에서도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이 진행되고 있다. 공적연금수급 연령은 현재 1950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 출생자의 경우 남자 65세, 여자 60세이다. 2010년 4월 6일부터 여자의 공적연금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남녀 공히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연금 크레딧에 대한 적격 연령 역시 공적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34년에서 2036년 사이, 2044년에서 2046년 사이 두 차례 추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67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수급 연령을 향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를 현재 고민 중이다. 이것은 67세와 68세로 연장하는 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수급 연령에 대한 추가 변경은 연금 크레딧 취득 연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연금법에 따라 2010년 4월 6일 이후 공적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잠재적 근로기간 중 30년 동안 국가보험 기여금을 (1) 납부하거나 (2)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3)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취득함으로써 전액 기초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액된 기초 공적연금이 지급되며 하한선은 크레딧 혹은 기여년수 1년이다.

2010년 4월 6일 이전에 공적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가보험기여년수와 잠재적 근로기간의 약 10분의 9에 해당하는 크레딧(공적연금수급연령 60세인 여자는 39년, 공적연금수급연령 65세인 남자와 여자는 44년)을 충족하면 기초공적연금 전액이 지급된다.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비례적으로 감액된 공적연금이 지급되며 최저수준은 25%이다(즉, 공적연금수급연령 60인 여자는 10년, 공적연금수급연령 65세인 남녀 11년).

한편 급여 수준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다. 2011년 4월부터 제2층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급여가 소매물가지수(RPI) 연동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초국가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2.5% 중 최댓값에 연동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급여 수준의 적절성 제고하였다.²⁷⁾ 연금 크레딧의 보장급여는 임금상승률에 연동되고 있지만, 2012/13년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연동 규정(2.8%)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보다 높은 급여 상승률(3.9%)을 적용함으로써 급여 적절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취해졌다.²⁸⁾

27) CPI가 RPI에 비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BSP와 달리 제2층 공적연금(GRP, SERPS, S2P)과 DB 방식 기업연금의 경우 연동 방식 변경은 급여 적절성에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음.

28) 반면 2008/09년 이후 임금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2012년의 경우 보장크레딧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크레딧을 수급하기 위한 기준소득이 인상되는 한편 급여 수준 또한 축소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제3장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 제1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 생활 안정 효과 분석
- 제2절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

제1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1. 분석 대상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기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한 기존 정부안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지급 방법이 일부 개선되었다.

당초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감액하여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급 방법안이 포함되었다. 국민연금이 월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을 막고자 국민연금 소득이 월 30만~40만원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총 수급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 외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당초 정부안의 계획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산정식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현 노인세대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산수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 65세 이상에 대한 실제 자산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수준을 추정하는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들로 분석대상을 한정지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으로 인한 노후생활 안정효과를 분석하는 지표로서 소득대체율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계산 방법은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표 3-1〉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와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비교(2012년 기준 63세 이상)

(단위: 명)

출생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년 5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분석 대상 비중 (국민연금 수급자/주민등록 인구통계)*100%
1949년생	455,001	179,058	39.35%
1948년생	457,818	208,953	45.64%
1947년생	442,429	207,008	46.79%
1946년생	305,936	162,093	52.98%
1945년생	354,035	141,560	39.98%
1944년생	346,489	144,750	41.78%
1943년생	411,339	135,493	32.94%
1942년생 이하	3,596,680	895,602	24.90%
계	6,369,727	2,074,517	32.57%

우선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실제 가입 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DB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노령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의 가입이력 및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인 B값의 분포를 균등분포로 가정하여 생성하였다. 데이터 생성 시 사용했던 가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63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는 34,832명의 수급자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가입이력이 있는 346,957명의 수급자로 구성되며,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692,7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례노령연금을 포함한 2012년 기준 63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 총 2,074,517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산출하였다. <표 3-2>은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서 본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한 수급자 통계자료이다.

<표 3-2>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단위: 명)

출생연도	노령연금 (20년 이상)	노령연금 (10~20년미만)	특례노령연금	계
1949년생	20,300	96,376	62,382	179,058
1948년생	13,664	41,253	154,036	208,953
1947년생	785	48,623	157,600	207,008
1946년생	39	36,754	125,300	162,093
1945년생	24	29,764	111,772	141,560
1944년생	11	28,269	116,470	144,750
1943년생	8	25,087	110,398	135,493
1942년생 이하	1	40,831	854,770	895,602
계	34,832	346,957	1,692,728	2,074,517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산출하기 위해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분석대상을 언급한 것과 같이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의 통계자료를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생애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분포를 생성하였다.

소득의 경우 B값 통계의 급간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였고, 각 소득 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가입기간에 대하여도 각 가입이력의 구간 안에서 각각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통계연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통계에는 각 해당 연금 종류의 전체 수급자에 대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2년 기준 63세 이상의 수급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분포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분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표 3-3>은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분포이다.

〈표 3-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B값 통계

(단위: 명)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 (단위: 천 원)	노령연금 (20년 이상)	노령연금 (10~20년 미만)	특례노령연금
235 미만	0	2	8
245~255	0	5	35
265~280	0	22	62
300~325	0	78	2,600
355~385	1	113	72,331
420~460	0	842	20,064
500~545	17	3,057	26,785
595~645	54	7,149	43,760
700~760	257	13,180	48,835
820~885	651	23,429	54,818
955~1,025	1,119	30,490	66,050
1,095~1,170	1,626	35,832	78,680
1,250~1,335	2,193	44,970	85,434
1,425~1,515	2,493	32,371	87,266
1,610~1,710	2,820	25,534	51,648
1,810~1,915	3,301	21,109	33,935
2,030~2,135	3,456	16,956	22,822
2,245~2,360	3,940	15,433	23,430
2,475~2,600	4,595	13,880	15,500
2,730~2,870	4,680	11,295	14,955
3,010~3,150	3,677	8,369	8,980
3,310~3,450	3,566	7,377	6,902
3,600~3,680	2,085	3,777	3,777
3,890 이상	34,304	47,599	60,405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산출

이번 절과 다음 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수급하게 될 경우 연금소득수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분석 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크기를 이번 절에서 먼저 산출한 후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을 다음 절에서 순차적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PA_t = \begin{cases} \left[\frac{\sum_{j=1}^{t-1} \frac{1}{\sum_{k=1}^{t-1} I_k} \times c_j \times (\alpha_j \cdot A + \beta_j \cdot B) \times I_j \right], & \sum_{k=1}^{t-1} I_k \leq 20 \\ \left[\frac{\sum_{j=1}^{t-1} \frac{1}{\sum_{k=1}^{t-1} I_k} \times c_j \times (\alpha_j \cdot A + \beta_j \cdot B) \times I_j \right] \\ \times \left[1 + 0.05 \times \left\{ \left(\sum_{k=1}^{t-1} I_k \right) - 20 \right\} \right] & , \sum_{k=1}^{t-1} I_k > 20 \end{cases}$$

t시점에서의 기본연금액(BPA_t)을 구하는 위의 식에서 A와 B는 각각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을 의미한다. 특히 B값의 경우 가입자의 가입기간동안의 과거소득을 A값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후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그리고 c는 급여 계수이고 α와 β는 소득재분배 정도를 결정하는 계수로 <표 3-4>와 같이 연도별로 다른 계수를 사용한다.

〈표 3-4〉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을 위한 급여계수

가입기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급여계수 c_j	2.4	1.8	1.5* (매년 0.015씩 감소)	1.2
α_j	1	1	1	1
β_j	0.75	1	1	1
소득대체율	70%	60%	50%	40%

마지막으로 I_j 는 지시자 변수로 j 번째 연도에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I_j = 1$ 이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I_j = 0$ 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은 $\sum_{k=1}^{t-1} I_k$ 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 포함)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액을 앞에서 언급한 기본연금액 산출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국민연금

(단위: 원)

출생연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949년생	402,527	486.355	(401,574, 403,480)
1948년생	289,265	388.830	(288,503, 290,027)
1947년생	264,009	290.751	(263,439, 264,579)
1946년생	259,906	315.362	(259,288, 260,524)
1945년생	255,576	328.134	(254,933, 256,219)
1944년생	251,760	315.514	(251,142, 252,379)
1943년생	249,190	319.728	(248,563, 249,817)
1942년생 이하	214,018	73.299	(213,874, 214,161)
전체	254,230	92.151	(254,049, 254,410)

출생코호트별로 분석해 보면 2012년 기준 63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254,230원이고, 연금 가입기간 중 개인의 생애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11.88%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은퇴 직전 시점에서의 생애평균소득(B값)과 은퇴 시점의 기본연금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text{소득대체율}_t = \frac{BPA_t/12}{B_{t-1}}$$

동일한 분석 대상에 대하여 출생코호트별로 분석하는 방법 대신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표 3-7>, <표 3-8>과 같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의 크기와 소득대체율 모두 증가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번 절에서 산출한 현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2014년부터 수급하게 될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수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3-6>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소득대체율

(단위: %)

출생연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949년생	22.19	0.032	(22.13,	22.26)
1948년생	13.60	0.024	(13.55,	13.65)
1947년생	13.10	0.024	(13.05,	13.14)
1946년생	12.84	0.027	(12.79,	12.89)
1945년생	12.46	0.028	(12.41,	12.52)
1944년생	12.13	0.027	(12.08,	12.18)
1943년생	11.90	0.027	(11.85,	11.96)
1942년생 이하	8.83	0.006	(8.82,	8.84)
전체	11.88	0.007	(11.87,	11.90)

〈표 3-7〉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단위: 원)

가입기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특례노령연금	5년 이상	202,508	27.952	(202,453,	202,562)
	10년	325,921	372.386	(325,191,	326,650)
	11년	358,499	409.676	(357,696,	359,302)
	12년	386,250	446.919	(385,374,	387,126)
	13년	414,001	484.162	(413,052,	414,950)
	14년	441,752	521.405	(440,730,	442,774)
노령연금	15년	469,503	558.648	(468,408,	470,598)
	16년	497,254	595.892	(496,086,	498,422)
	17년	525,004	633.135	(523,764,	526,245)
	18년	552,755	670.378	(551,441,	554,069)
	19년	580,506	707.621	(579,119,	581,893)
	20년 이상	766,512	779.202	(764,985,	768,039)

〈표 3-8〉 2012년 기준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국민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

(단위: %)

가입기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특례노령연금	5년 이상	7.82	0.002	(7.82,	7.83)
	10년	21.51	0.036	(21.44,	21.58)
	11년	23.66	0.040	(23.58,	23.74)
	12년	25.46	0.043	(25.38,	25.54)
	13년	27.26	0.045	(27.17,	27.35)
	14년	29.06	0.048	(28.97,	29.16)
노령연금	15년	30.86	0.051	(30.76,	30.96)
	16년	32.66	0.054	(32.56,	32.77)
	17년	34.46	0.056	(34.35,	34.57)
	18년	36.26	0.059	(36.15,	36.38)
	19년	38.07	0.062	(37.94,	38.19)
	20년 이상	29.45	0.039	(29.38,	29.53)

4.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산출 결과 및 분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10만원의 부가연금을 지원하여 수급 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들이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만큼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부분인 B급여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의 성격인 A급여 부분만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기초연금액} = \max\left[\text{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A\text{급여}, 0\right] + \text{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단, $a \geq b$ 이면, $\max(a, b) = a$ 이고,
 $a < b$ 이면, $\max(a, b) = b$ 이다.

위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연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A급여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A급여의 크기는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출식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다음 식에서 사용된 c_j , α_j , β_j 및 I_j 에 대한 정의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에서 사용한 정의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생애평균소득의 분포가 전체 자산의 분포와도 동일하다 가정 하여 생애평균소득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실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활용한 기초 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효과 분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A_{\text{급여}_t} = \begin{cases} \left[\frac{\sum_{j=1}^{t-1} 1}{\sum_{k=1}^{t-1} I_k} \times c_j \times (\alpha_j \cdot A) \times I_j \right], & \sum_{k=1}^{t-1} I_k \leq 20 \\ \left[\frac{\sum_{j=1}^{t-1} 1}{\sum_{k=1}^{t-1} I_k} \times c_j \times (\alpha_j \cdot A) \times I_j \right] \\ \times \left[1 + 0.05 \times \left\{ \left(\sum_{k=1}^{t-1} I_k \right) - 20 \right\} \right], & \sum_{k=1}^{t-1} I_k > 20 \end{cases}$$

〈표 3-9〉 소득분위별 평균소득(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B값 이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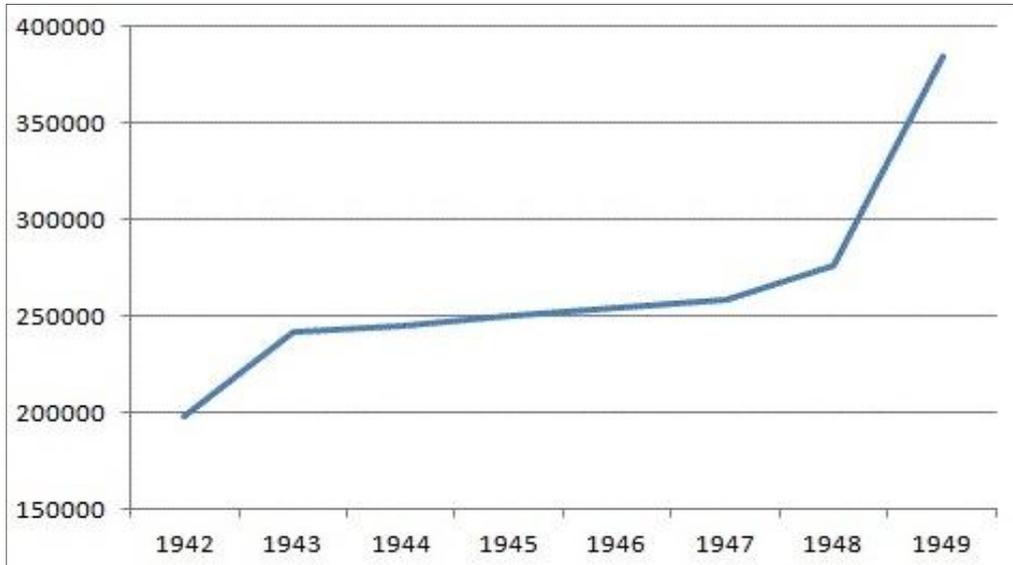
(단위: 원)

소득분위	분위별 평균 생애평균소득(B값)
1분위	957,307
2분위	1,355,691
3분위	1,725,811
4분위	2,106,697
5분위	2,475,622
6분위	2,857,430
7분위	3,350,598
8분위 이상	3,866,029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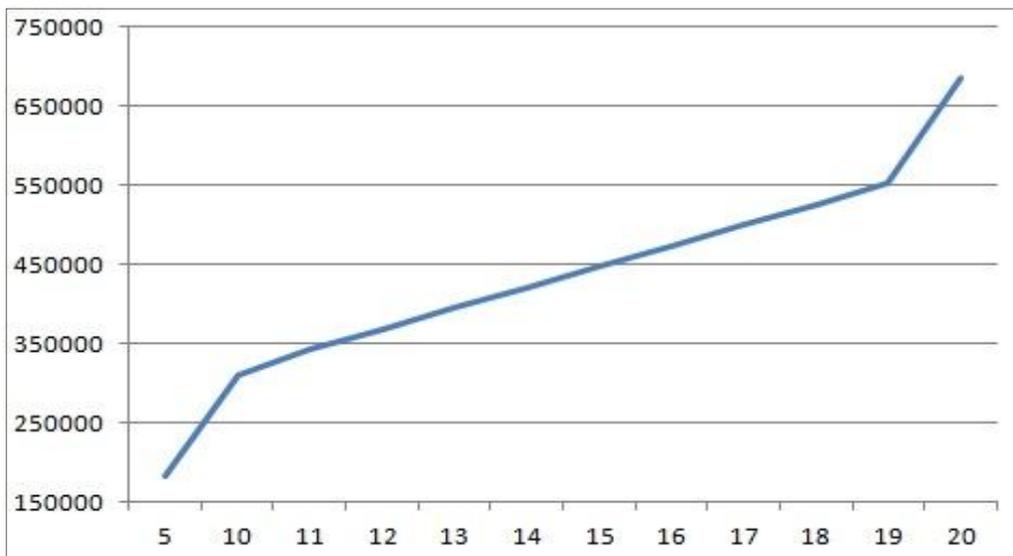
60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그림 3-1] 출생 코호트별 평균 국민연금¹⁾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그림 3-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¹⁾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본 연구의 가정 하에서 산출한 소득하위 70%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준은 [그림 3-1],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그림 3-2]와 같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을 산정해 본 결과 <표 3-10>, <표 3-11>과 같이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의 크기는 20만원에 가까워졌으며, 가입기간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 일수록 기초연금의 크기가 10만원에 가까워졌다. <표 3-11>에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이 모두 20만원으로 산출된 이유는 국민연금 실제 DB를 사용하지 않아 실제 가입이력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B값 및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 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가입시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가입기간이 5년이라 가정하여 기초연금을 산출하였고,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모두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산출된 것이다.

<표 3-10>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기초연금¹⁾

(단위: 원)

출생연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1942년생 이전	195,956	23.023	(195,910,	196,001)
1943년생	184,425	104.601	(184,220,	184,630)
1944년생	183,625	102.952	(183,423,	183,827)
1945년생	182,458	106.500	(182,249,	182,667)
1946년생	181,147	101.808	(180,948,	181,347)
1947년생	180,196	91.708	(180,017,	180,376)
1948년생	177,360	99.454	(177,165,	177,555)
1949년생	150,359	112.262	(150,139,	150,58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62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표 3-11〉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별 평균 기초연금¹⁾

(단위: 원)

가입기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특례노령연금	5년 이상	200,000	0		
	10년	189,195	73.8463	(189,050,	189,340)
	11년	176,544	100.9802	(176,346,	176,742)
	12년	162,866	105.0332	(162,661,	163,072)
	13년	148,663	94.1468	(148,479,	148,848)
	14년	135,332	75.4675	(135,184,	135,480)
노령연금	15년	123,114	57.1345	(123,002,	123,226)
	16년	111,807	41.7456	(111,725,	111,888)
	17년	101,189	29.3070	(101,132,	101,247)
	18년	100,268	11.6295	(100,245,	100,291)
	19년	100,027	2.8640	(100,021,	100,032)
	20년 이상	100,000	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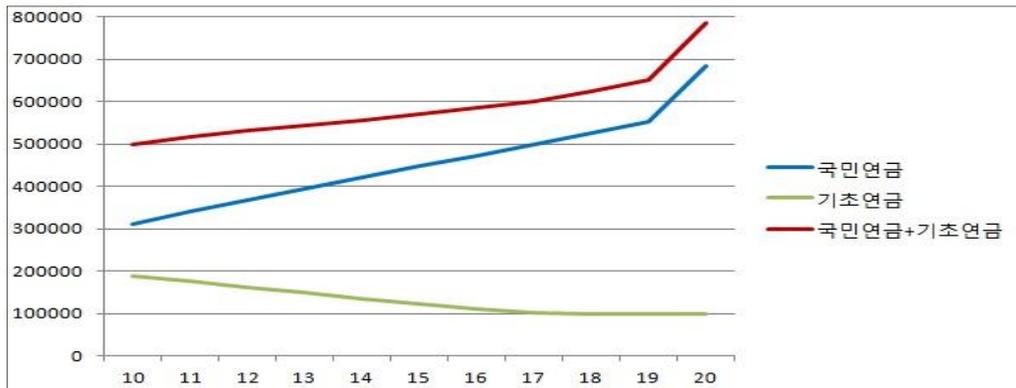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분석방법 하에서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B값 기준 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의 크기는 〈표 3-12〉와 같고, 소득하위 70% 중에서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지급받는 수급자 수는 소득하위 70%인 1,452,449명 중 1,140,820명으로 약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별 수급자 수¹⁾

(단위: 명, %)

기초연금 (총 평균 184,230원)	수급자 수	비중
10만원 이상 12만원 이하	172,049	11.85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51,405	3.54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42,887	2.95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27,820	1.91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158,288	79.75
합 계	1,452,449	10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그림 3-3〕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평균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교¹⁾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표 3-11〉과 같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액의 크기가 감소하여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이 불리한 제도인 것으로 비춰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성격 상 국민연금이 [그림 3-2]와 같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수급액이 증가하여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두 연금의 총 합은 [그림 3-3]과 같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앞 절에서는 단순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금액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먼저 소득대체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분포 가정 하에서 분석대상의 소득하위 70%의 평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3.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총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24.1%로 기초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만 수급할 경우보다 약 10.2%p 소득대체율이 증가하였다. 참고로 평균 소득대체율이 낮게 산출된 이유는 각 출생연도마다 다양한 가입기간의 수급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평균값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소득대체율이 산출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 3-13>과 <표 3-14>로 부터 각각 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출생코호트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¹⁾

(단위: %)

출생연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①)	[국민연금+기초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②)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증가 (②-①)
1942년생 이전	10.04	20.17	10.13%p
1943년생	14.01	24.24	10.23%p
1944년생	14.29	24.53	10.24%p
1945년생	14.69	24.94	10.25%p
1946년생	15.14	25.40	10.26%p
1947년생	15.43	25.68	10.25%p
1948년생	15.79	25.72	9.93%p
1949년생	24.76	34.74	9.98%p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표 3-14〉 가입기간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¹⁾

(단위: %)

가입기간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①)	[국민연금+기초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②)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증가 (②-①)	
특례노령연금	5년 이상	8.64	18.74	10.1%p
	10년	22.37	37.23	14.86%p
	11년	24.61	38.68	14.07%p
	12년	26.47	39.55	13.08%p
	13년	28.34	40.26	11.92%p
	14년	30.20	40.98	10.78%p
노령연금	15년	32.07	41.79	9.72%p
	16년	33.93	42.70	8.77%p
	17년	35.80	43.68	7.88%p
	18년	37.66	45.39	7.73%p
	19년	39.53	47.21	7.68%p
	20년 이상	32.36	37.41	5.05%p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출생코호트별 소득대체율의 변화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의 크기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의 변화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 크기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림·우해봉(2014)은 소득대체율이 “은퇴 시점에서 측정된 은퇴 소득의 적정성을 보여 주는 관계로 전체 생애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개시 시점부터 수급자 사망 시점까지의 전체 수급 기간을 고려하여 수익-부담 지표로서 수익비(benefit-cost ratio)와 순이전액(net transfer)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전체 수급기간과 보험료가 납입되는 가입기간의 연금액 총액 및 보험료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수익비와 순이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총액의 수급 직전 기준 가치로 환산한 값(FV_보험료총액)과 장래에 지급될 연금액 총액(PV_연금액총액)의 연금 개시 시점의 현재 가치가 필요하다. 두 값들은 해당 시점의 연금액 또는 보험료를 할인율을 이용하여 수급 직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다.

$$FV_보험료\ 총액_t = \sum_{j=0}^{t-1} 12 \times wage_j \times rtcont_j \times \left[\prod_{k=0}^j (1 + drate_k) \right]$$

위 식에서 $wage_j$ 는 (j+1)번째 해의 월 평균소득을 나타내고, $rtcont_j$ 는 보험료율을 나타내며, $drate_j$ 는 (j+1)번째 해의 할인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rate_j$ 를 0%로 가정하여 매달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1년치 보험료를 구한 후 총 가입기간을 곱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연금액 총액의 현재의 경우에도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할인율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의 1년 총 금액에 최초 수급 시점 기준으로 수급자의 기대여명($explife$)을 곱하는 방법으로 연금액 총액의 현재가치(PV_연금액총액)를 산출하였다. 참고로 아래 식에서 $INFrt_k$ 는 (j+1)번째 해의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PV_연금액\ 총액_t = \sum_{j=0}^{explife-1} \frac{(12 \times BPA_j) \times \left[\prod_{k=0}^j (1 + INFrt_k) \right]}{\left[\prod_{k=0}^j (1 + drate_k) \right]}$$

위의 두 식을 이용하여 수익비와 순이전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수익비} = \frac{PV_연금액총액}{FV_보험료총액}$$

$$\text{순이전액} = PV_연금액총액 - FV_보험료총액$$

위 식들을 이용하여 출생코호트별, 가입기간별 수익비와 순이전액을 산출해 본 결과 출생코호트별로는 수익비, 순이전액 모두 증가 폭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가입기간별로는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익비, 순이전액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3-15〉 출생코호트별 공적연금의 수익비와 순이전액¹⁾

출생연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①)	[국민연금+기초연금]의 평균 수익비(②)	기초연금으로 인한 수익비의 변화 (②-①)	국민연금의 평균 순이전액(③) (단위: 천원)	[국민연금+기초연금]의 평균 순이전액(④) (단위: 천원)	기초연금으로 인한 순이전액의 변화 (④-③) (단위: 천원)
1942년생 이전	4.68	7.70	3.02	43,900	76,800	32,900
1943년생	4.88	7.76	2.88	54,500	87,700	33,200
1944년생	4.89	7.94	3.05	55,300	90,500	35,200
1945년생	4.91	7.93	3.02	56,400	91,400	35,000
1946년생	4.94	8.09	3.15	57,600	94,500	36,900
1947년생	4.94	8.25	3.31	58,500	97,400	38,900
1948년생	4.88	8.26	3.38	62,000	102,000	40,000
1949년생	5.29	7.74	2.45	87,500	124,000	36,50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할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또한, 소득하위 70%의 평균 국민연금 수익비는 4.85,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수익비는 7.89로 대략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익비가 약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순이전액의 경우 국민연금은 55,000,000원,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순이전액은 90,200,000원으로 약 6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현 노인세대를 제외한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하며 본 절에서와는 차별되는 현 50대 이하의 출생코호트별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68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표 3-16〉 가입기간별 공적연금의 수익비와 순이전액¹⁾

가입기간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 (①)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평균수익비 (②)	기초연금으로 인한 수익비변화 (②-①)	국민연금의 평균순이전액 (③) <small>(단위: 천원)</small>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평균순이전액 (④) <small>(단위: 천원)</small>	기초연금으로 인한 순이전액의 변화 (④-③) <small>(단위: 천원)</small>
특례 노령 연금	5년 이상	4.61	8.11	3.50	40,200	77,600	37,400
	10년	5.96	8.86	2.90	72,600	112,000	39,400
노령 연금	11년	5.96	8.46	2.50	79,900	117,000	37,100
	12년	5.88	8.01	2.13	85,800	120,000	34,200
	13년	5.81	7.60	1.79	91,700	123,000	31,300
	14년	5.75	7.25	1.50	97,500	126,000	28,500
	15년	5.70	6.97	1.27	103,000	129,000	26,000
	16년	5.66	6.72	1.06	109,000	133,000	24,000
	17년	5.62	6.52	0.90	115,000	136,000	21,000
	18년	5.58	6.42	0.84	121,000	142,000	21,000
	19년	5.55	6.34	0.79	127,000	148,000	21,000
	20년 이상	4.31	4.86	0.55	148,000	172,000	24,000

주: 1)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중 본고에서 가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방법(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제로 한 결과임

제2절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 생활 안정 효과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기초연금의 출생코호트별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이번 절에서는 1절의 분석 대상과는 다른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기준 20~50대에 대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산출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였으나, 본 절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²⁹⁾를 이용하여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의 월급여액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소득계층별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본 절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학력 기준으로 크게 세 그룹(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눈 후 각 그룹 별로 상, 중, 하층으로 소득수준별 그룹을 구분하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각 연령대 별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나눈 후 각 교육수준별 그룹을 총 3개 층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연령별 총 9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세분화 하였다. <표 3-17>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층으로 구분하여 만든

2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범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부문 모든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이며 정부기관(공무원), 국방(군인, 전투·의무경찰); 가사서비스업(보모, 정원사); 개인경영 농림어업체(단, 법인업체는 포함);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소속 내·외국인);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판매상은 제외한다. 또한, 조사대상은 표본 사업체의 사용근로자이며 일부 근로자(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건설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 근로자)는 제외한다.

연령별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이다. 다른 그룹의 평균 월급여액은 부록에 기술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대상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2년 전후의 시점에 연령별 평균 월급여액은 임금상승률을 할인 또는 부리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표 3-17>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대졸 이상 그룹)

(단위: 원)

	대졸 이상 (하층)	대졸 이상 (중층)	대졸 이상 (상층)
22세	1,383,948	2,394,386	3,450,873
24세	1,472,125	2,382,075	4,227,698
26세	1,531,003	2,421,083	3,937,117
28세	1,573,447	2,441,913	4,015,883
30세	1,563,754	2,497,758	4,320,908
32세	1,548,351	2,572,266	4,323,531
34세	1,520,464	2,625,478	4,425,088
36세	1,505,253	2,668,344	4,573,396
38세	1,436,192	2,676,694	4,781,536
40세	1,386,184	2,697,766	4,901,082
42세	1,407,282	2,726,895	5,149,320
44세	1,421,813	2,680,377	5,218,111
46세	1,375,554	2,684,932	5,304,508
48세	1,367,608	2,688,400	5,554,759
50세	1,326,549	2,733,125	5,574,849
52세	1,367,517	2,630,769	5,760,800
54세	1,357,068	2,626,419	5,946,493
56세	1,344,341	2,672,365	6,003,451
58세	1,355,244	2,598,053	6,201,580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시 사용한 기초변수들에 설명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출생코호트별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액 산출

본 절에서는 1절에서 현 세대의 국민연금을 산출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1절에서 분석한 방법과 차이점은 1절에서는 <국민연금통계연보>의 B값을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으로 설정하여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을 산출하였던 것에 반해 본 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월급여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와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생애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예상해보았다.

연령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대가입기간을 산출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최기흥·한정림 (2013)의 분석 방법을 응용하였다. 최기흥·한정림 (2013)은 기여연수 즉, 가입기간을 계산 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실제 국민연금 DB를 이용하여 평가한 가입기간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n_{x+t} = \sum_{j=1}^t \frac{l_{x+j}}{l_x} \times LF_{x+j} \times (1 - U_{x+j})$$

단, n_{x+t} : x 세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x+t$ 세 시점의
기대가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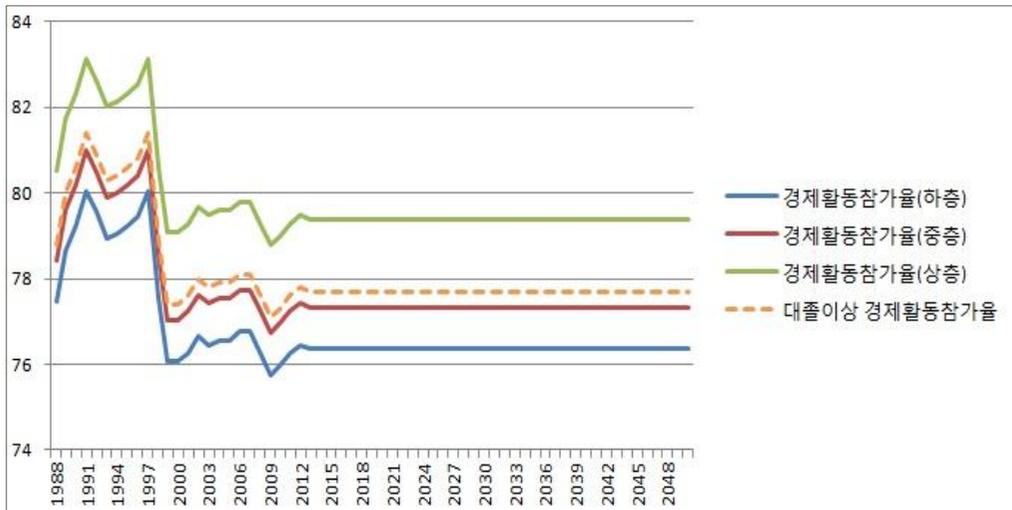
l_{x+j} : 국민생명표 상의 $(x+j)$ 세의 생존자 수

LF_{x+j} : $(x+j)$ 세의 경제활동참가율

U_{x+j} : 실업률, $(1 - U_{x+j})$: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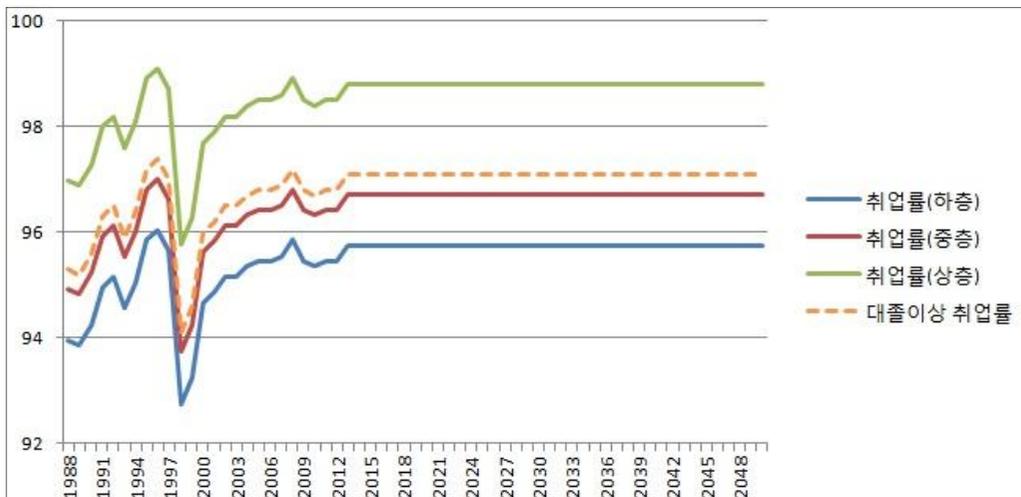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식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을 곱하여 과대평가된 기대가입기간을 낮추도록 하였다. [그림 3-4], [그림 3-5]은 이 때 사용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값들이며, 이 데이터들은 통계청 데이터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2013)를 참조한 것이다.

[그림 3-4]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대졸 이상 그룹)



자료: 통계청

[그림 3-5] 소득계층별 취업률(대졸 이상 그룹)



자료: 통계청

[그림 3-4]와 [그림 3-5] 그리고 최기홍·한정림(2013)의 기대가입기간 식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3-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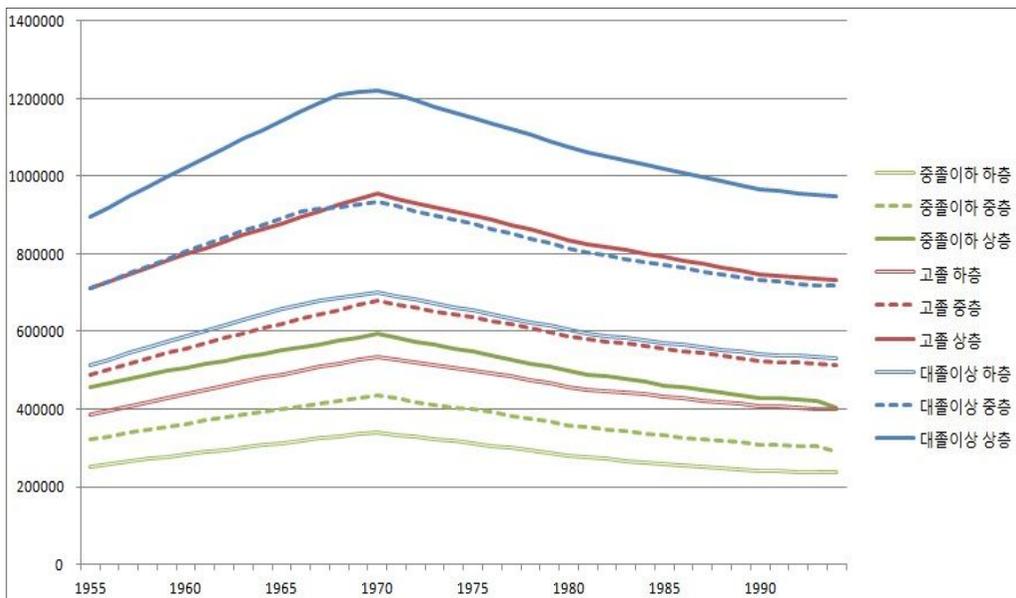
<표 3-18> 출생코호트,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위: 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1955년생	10.43	11.00	11.58	15.05	15.42	16.11	18.33	18.75	19.66
1957년생	11.13	11.73	12.35	16.16	16.56	17.3	19.7	20.15	21.13
1959년생	11.83	12.46	13.12	17.27	17.7	18.49	21.07	21.55	22.6
1961년생	12.53	13.2	13.89	18.38	18.84	19.67	22.44	22.95	24.07
1963년생	13.23	13.93	14.67	19.49	19.97	20.86	23.81	24.35	25.54
1965년생	13.94	14.66	15.44	20.6	21.11	22.05	25.17	25.75	27.01
1967년생	14.64	15.4	16.21	21.71	22.25	23.24	26.54	27.15	28.47
1969년생	15.34	16.13	16.98	22.82	23.39	24.43	27.91	28.55	29.94
1971년생	15.63	16.44	17.29	23.37	23.95	25.01	28.6	29.25	30.68
1973년생	15.54	16.33	17.18	23.37	23.95	25.02	28.61	29.27	30.69
1975년생	15.49	16.27	17.11	23.44	24.03	25.1	28.7	29.36	30.79
1977년생	15.36	16.12	16.95	23.4	23.99	25.06	28.67	29.33	30.76
1979년생	15.21	15.95	16.77	23.34	23.93	24.99	28.61	29.27	30.7
1981년생	15.12	15.85	16.66	23.33	23.92	24.98	28.6	29.26	30.69
1983년생	15.04	15.76	16.56	23.34	23.93	24.99	28.64	29.3	30.73
1985년생	14.91	15.61	16.41	23.31	23.91	24.97	28.64	29.3	30.73
1987년생	14.82	15.51	16.3	23.29	23.89	24.95	28.66	29.32	30.75
1989년생	14.75	15.43	16.21	23.27	23.87	24.93	28.67	29.33	30.76
1991년생	14.72	15.39	16.17	23.26	23.85	24.91	28.68	29.34	30.77
1993년생	14.72	15.39	16.17	23.26	23.86	24.91	28.71	29.37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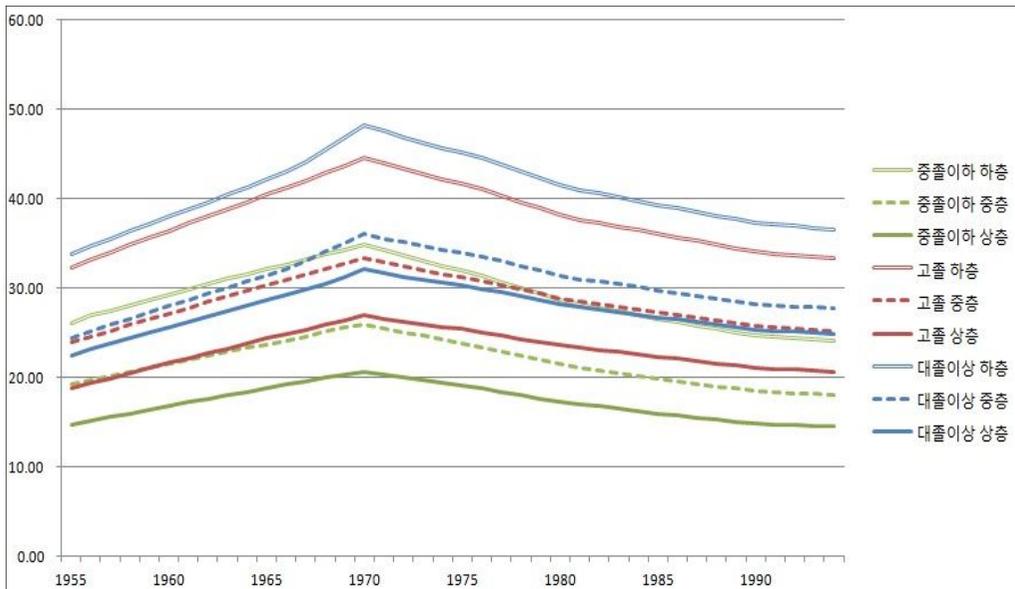
〈표 3-18〉은 〈2012년 임금구조기본조사〉 통계 자료 상의 소득계층이 과거 또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고학력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기대가입기간도 증가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학력 근로자일수록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기대가입기간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생애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19〉와 부록에 있는 표와 같다. [그림 3-6]은 〈표 3-19〉와 부록에 있는 표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고,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70년생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3-6]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비교



[그림 3-7]은 <표 3-19>와 부록에 있는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으나, 각 교육수준별 그룹에서도 하층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모두 높게 산출되었다. 그리고,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의 증감 패턴과 동일하게 소득대체율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3-7]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76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표 3-19〉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고졸 그룹)¹⁾

(단위: 원, %)

출생 연도	하층			중층			상층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955	1,195,790	386,634	32.33	2,047,859	489,838	23.91	3,782,743	711,009	18.79
1959	1,205,371	429,683	35.64	2,050,959	544,286	26.53	3,710,975	781,834	21.06
1964	1,212,343	480,570	39.63	2,045,354	607,821	29.71	3,626,044	863,534	23.81
1969	1,203,485	526,425	43.74	2,038,423	667,300	32.73	3,558,747	940,073	26.41
1974	1,198,071	505,258	42.17	2,036,311	643,909	31.62	3,544,229	909,360	25.65
1979	1,197,674	466,251	38.92	2,036,083	597,875	29.36	3,544,154	849,462	23.96
1984	1,197,363	437,306	36.52	2,036,077	562,277	27.61	3,544,053	801,083	22.60
1989	1,197,517	413,071	34.49	2,036,182	531,220	26.08	3,545,151	756,920	21.35
1994	1,197,635	399,647	33.36	2,036,228	513,993	25.24	3,545,486	732,397	20.65

주: 1) 표의 결과는 2014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환산한 현재가치이며, 이때 할인율로 A값 재평가율을 사용하였음.

3. 미래세대의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비교 분석

미래세대의 기초연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 시점에서의 기준연금액 및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최대 수금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인 국민연금 30만원에 대한 가정이 먼저 정의되어야만 한다. 비록 현재 기준연금액 20만원과 매우 적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계층의 최소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정한 국민연금 30만원 기준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년마다 보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표 3-20>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초연금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분석은 출생코호트별로 각각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방식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수준별 그룹을 상, 중, 하층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각 소득계층별로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 3-2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대한 시나리오

구분	기준연금액
시나리오 1	2014년 기준 20만원. 향후 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2	2014년 기준 20만원이 A값의 10%이므로 향후 수급 시점 A값의 10%로 가정
시나리오 3	2014년 기준 20만원. 향후 A값 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4	2014년 기준 20만원을 시작으로 매 5년동안 물가상승률로 증가하고, 매 여섯 번째 해마다 A값의 10%로 보정. (계단식 증가형 가정)
시나리오 5	기준연금액의 2014년 기준 현재가치가 항상 20만이라 가정.

기초연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는 <표 3-20>을 따르며,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인 20만원을 모두 수급하게 될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하한선 30만원은 향후 계속 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액 산출 결과는 각 해당 출생코호트들의 65세 수급개시 시점의 가치를 2014년 기준 가치로 환산하였고, 이때 할인율로 A값 재평가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5는 아래의 식을 그대로 이용하되 A급여만 출생코호트별로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시점의 가치를 A값 재평가율을 이용하여 2014년 기준 가치로 환산하여 대입하는 방법을 가정한 것이다.

$$\text{기초연금액} = \max\left[\left(200,000 - \frac{2}{3} \times A\text{급여}\right), 0\right] + 100,000$$

단, $a \geq b$ 이면, $\max(a, b) = a$ 이고,

$a < b$ 이면, $\max(a, b) = b$ 이다.

<표 3-21>은 총 9개의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그룹 중 교육수준이 고졸이고 소득계층이 중층에 속하는 근로자 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결과이다. 출생코호트가 증가할 때 기초연금의 수준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1970년생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고, 두 공적연금의 총 수급액은 1970년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준 변화와 반대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준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자산(소득)수준이 높거나 또는 높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의 감소폭보다 국민연금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공적연금의 합이 기초연금의 감소효과를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단, 본 보고서에서는 출생코호트별 평균소득을 가정하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을 고려하여 출생코호트별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만을 산출하여 기초연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초연금의 감소폭을 국민연금 증가폭이 상쇄시켜주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0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표 3-21〉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고졸, 중층 그룹)¹⁾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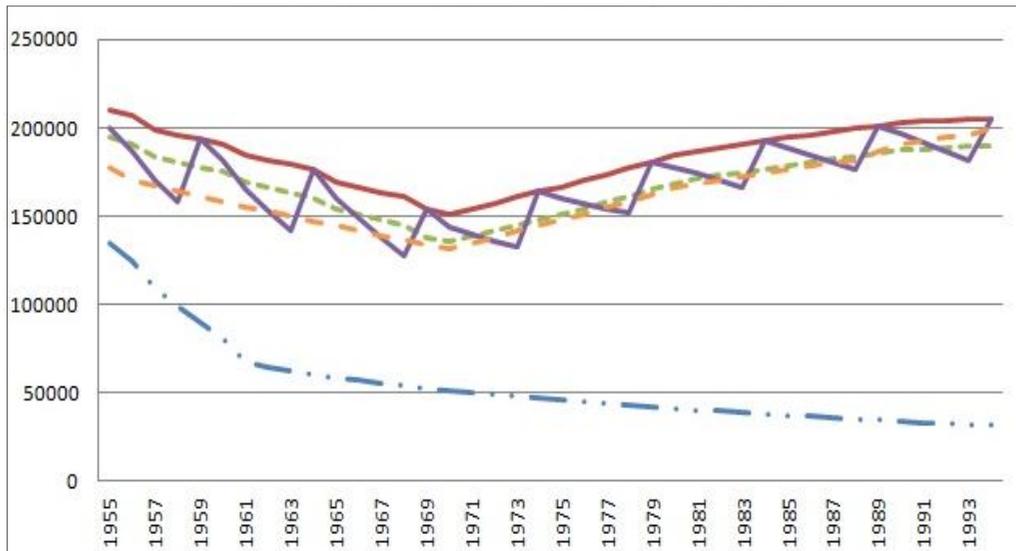
출생연도		1955	1959	1964	1969	1974	1979	1984	1989	1994
시나리오 1	기초연금	94,078	70,553	60,409	52,636	46,896	42,219	38,163	34,705	31,492
	국민연금 +기초연금	583,916	614,840	668,231	719,936	690,805	640,094	600,441	565,925	545,486
시나리오 2	기초연금	169,025	144,507	118,097	105,220	105,220	115,314	128,890	138,996	144,896
	국민연금 +기초연금	658,863	688,793	725,919	772,520	749,130	713,190	691,168	670,216	658,890
시나리오 3	기초연금	153,363	128,844	102,435	100,000	100,000	100,000	113,228	123,334	129,234
	국민연금 +기초연금	643,201	673,131	710,257	767,300	743,909	697,875	675,505	654,554	643,227
시나리오 4	기초연금	158,677	144,507	118,097	105,220	105,220	115,314	128,890	138,996	144,896
	국민연금 +기초연금	648,515	688,793	725,919	772,520	749,130	713,190	691,168	670,216	658,890
시나리오 5	기초연금	123,621	105,351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9,480	120,008	125,847
	국민연금 +기초연금	613,460	649,638	707,821	767,300	743,909	697,875	671,758	651,228	639,840

주: 1) 표의 결과는 각 출생코호트들의 65세 기초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가치를 2014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환산한 현재가치이며, 이때 할인율로 A값 재평가율을 사용하였음.

[그림 3-8]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하층), 교육수준별(중졸 이하)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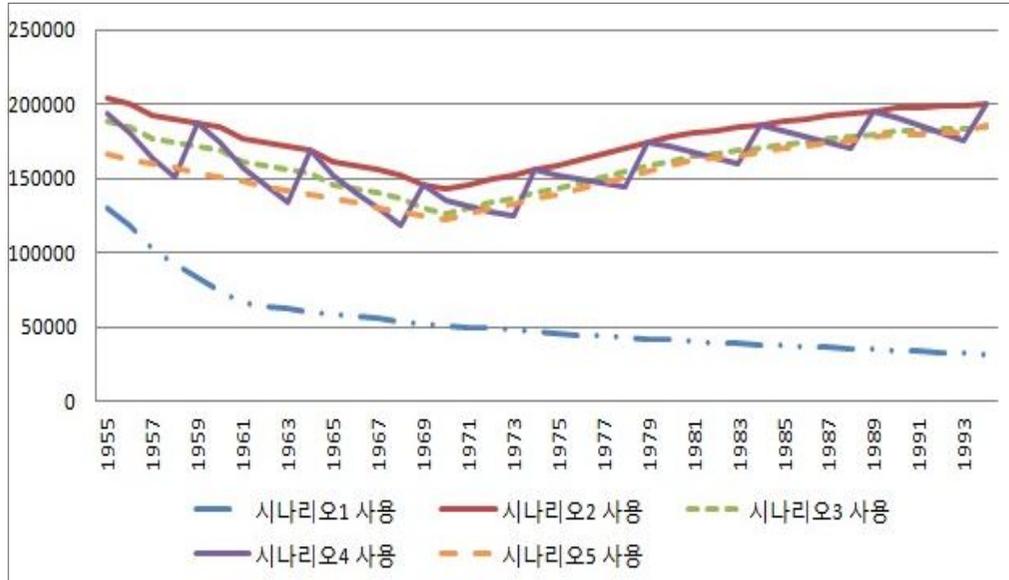


[그림 3-9]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중층), 교육수준별(중졸 이하)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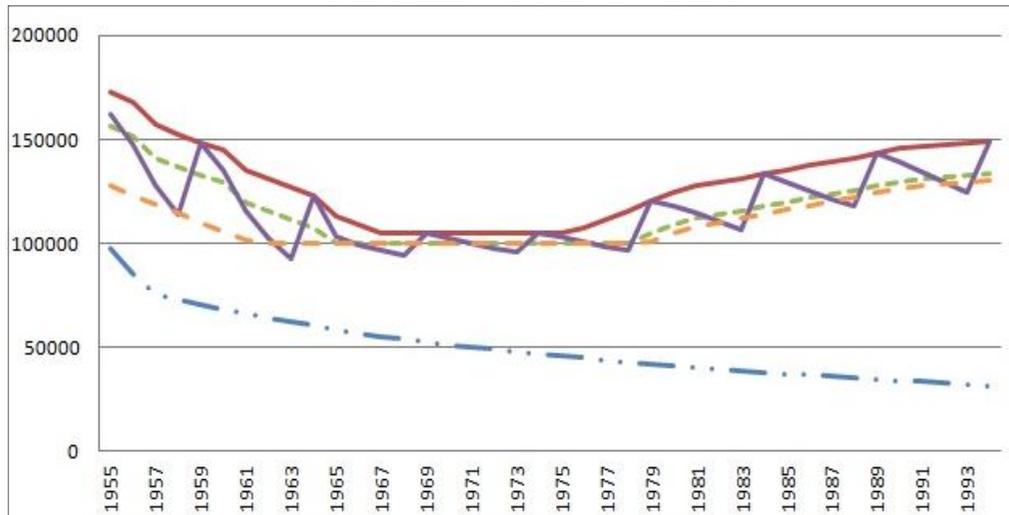


82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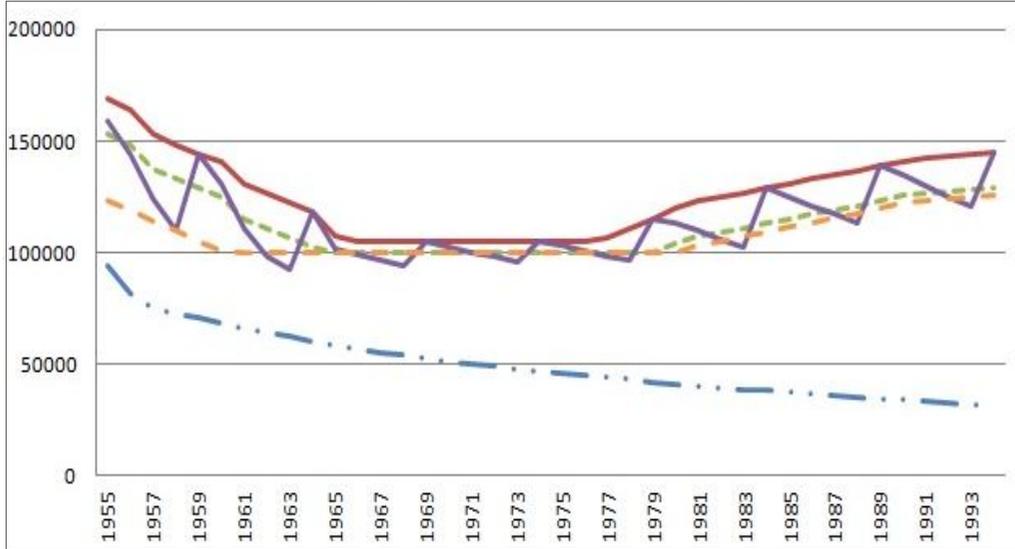
[그림 3-10]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상층), 교육수준별(중졸 이하)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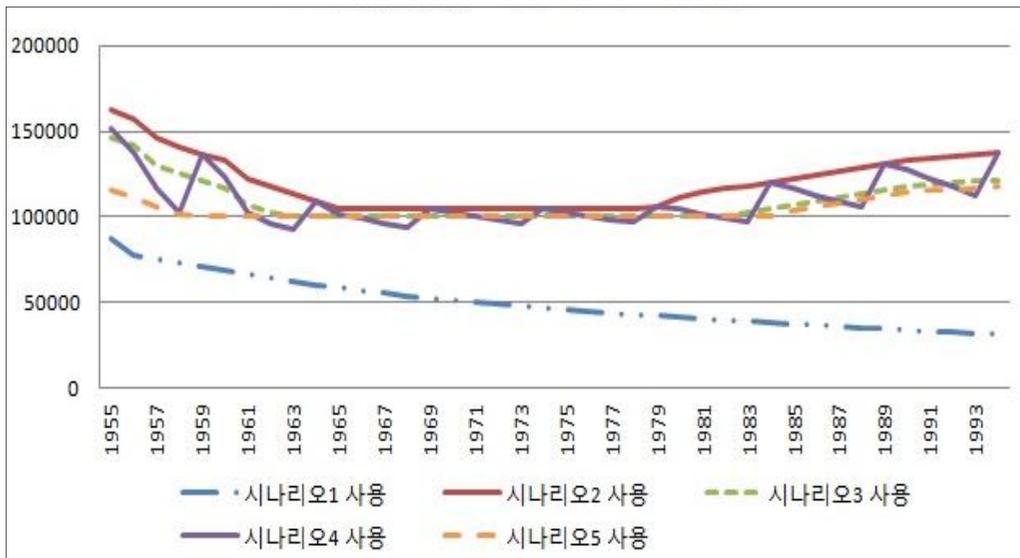
[그림 3-11]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하층), 교육수준별(고졸) 기초연금액 비교



[그림 3-12]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중층), 교육수준별(고졸)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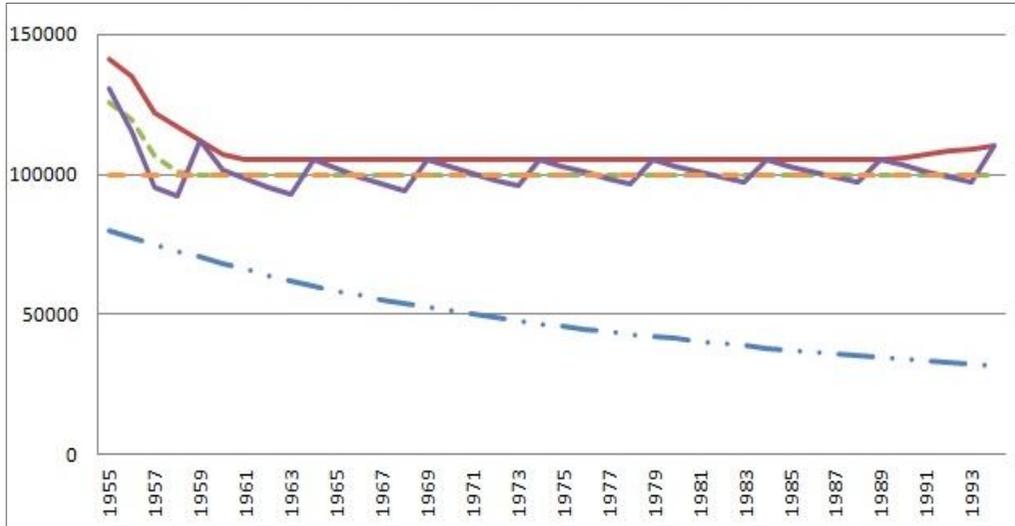


[그림 3-13]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상층), 교육수준별(고졸)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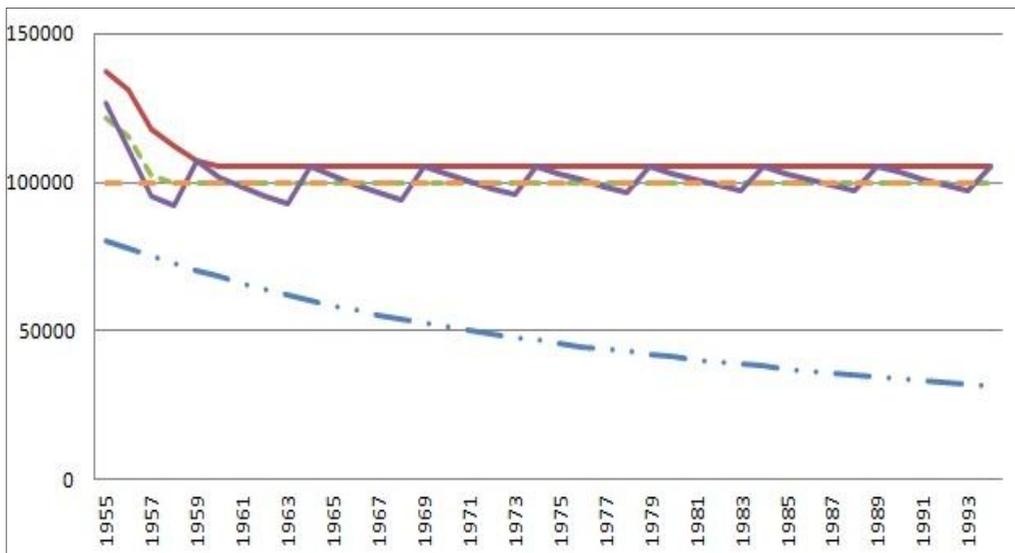


8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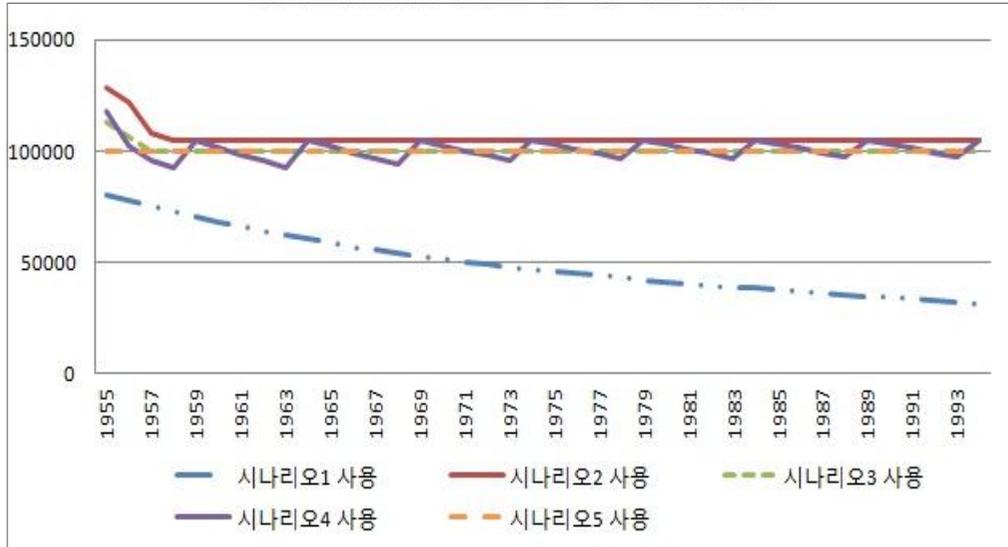
[그림 3-14]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하층), 교육수준별(대졸 이상) 기초연금액 비교



[그림 3-15]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중층), 교육수준별(대졸 이상)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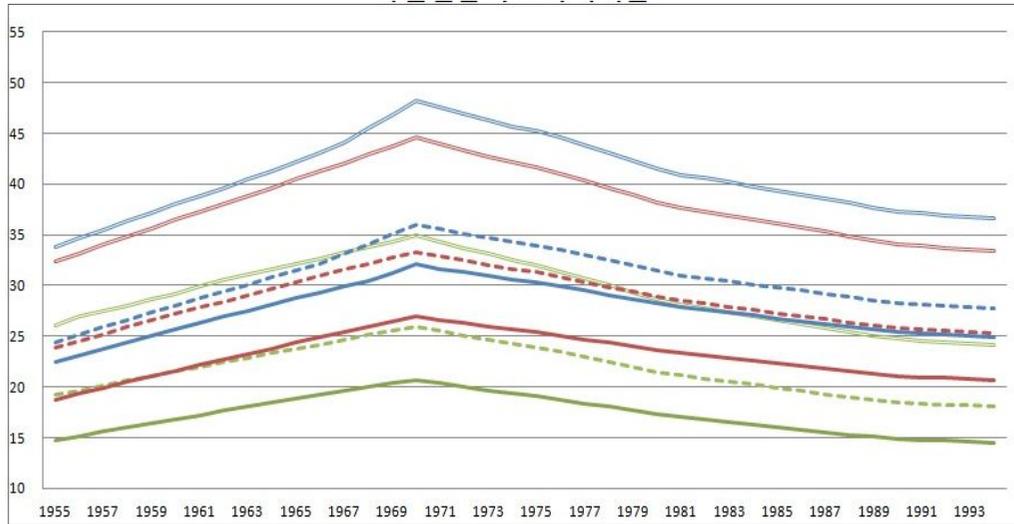


[그림 3-16]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상층), 교육수준별(대졸 이상) 기초연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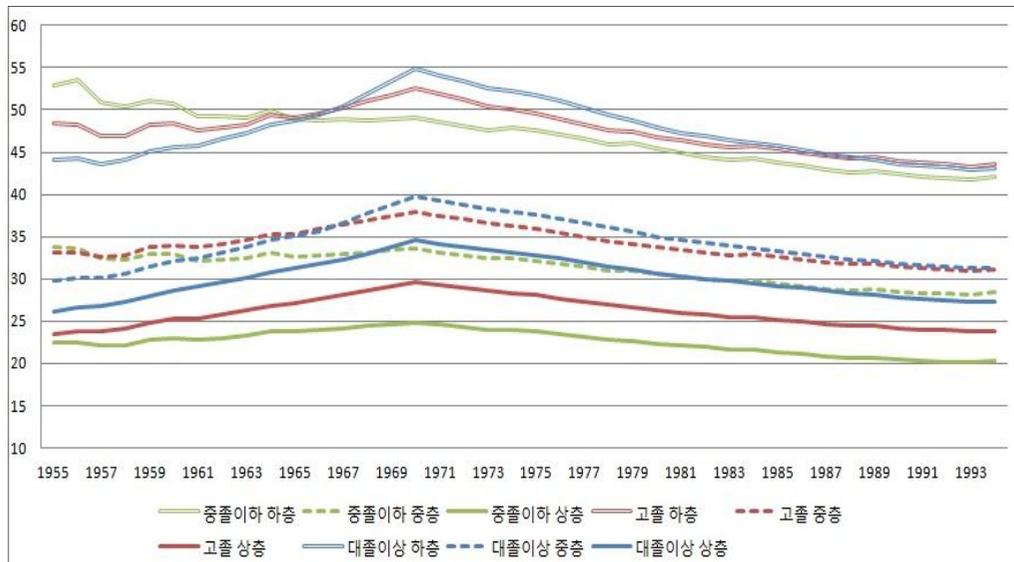


[그림 3-8]~[그림 3-16]은 총 9개의 그룹에 대한 기준연금액의 시나리오별 기초연금 산출 결과이다. 총 9개의 그룹의 그래프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물가상승률로 증가시킬 경우가 미래세대로 갈수록 낮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졸 이하의 하층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그룹에서는 A값의 10%를 기준연금액으로 가정한 시나리오2를 이용한 기초연금의 크기가 전체 세대에서 나머지 4개 시나리오들 보다 높은 기초연금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3-17]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그림 3-18]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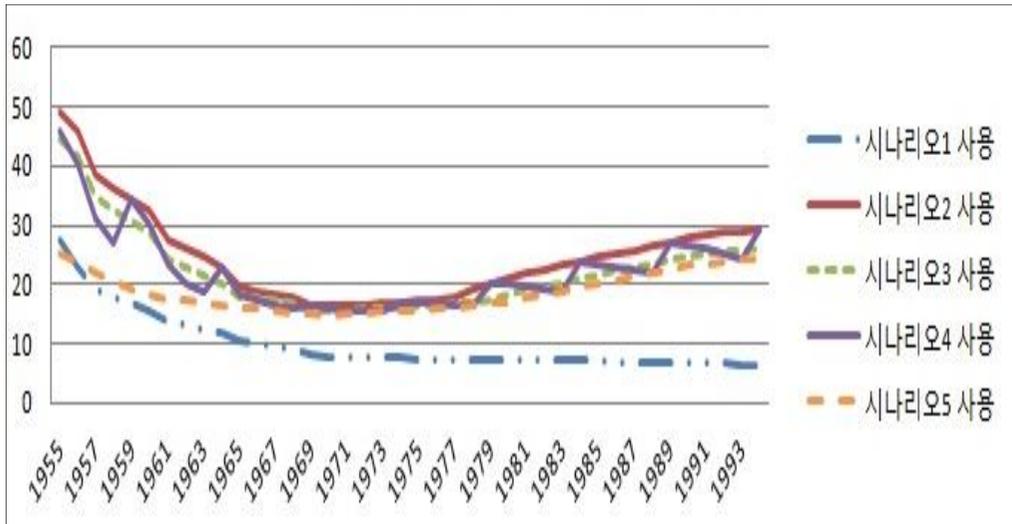


[그림 3-17], [그림 3-18]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기초 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비교한 결과이다. 두 그림을 함께 비교해보면 출생코호트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의 증

가, 감소 패턴은 두 그래프 모두 유사하나, 소득계층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교육수준 그룹의 소득계층이 하층에 속하는 근로자의 두 연금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항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하게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만 수급할 때보다 얼마만큼의 소득대체율이 증가하게 되는지는 [그림 3-19]과 <표 3-22>에서 소득대체율의 증가폭 크기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9] 다양한 기준연금액 시나리오 하에서 출생코호트,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민+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율(고졸, 중층 그룹)

(단위: %)



[그림 3-19]을 보면 다양한 시나리오들 중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상승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를 이용했을 때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8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표 3-22〉 다양한 기준연금액을 가정한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국민+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고졸, 중층 그룹)

(단위: %)

출생연도	국민연금 (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②)	(②-①)	(③)	(③-①)	(④)	(④-①)	(⑤)	(⑤-①)	(⑥)	(⑥-①)
1955	23.91	30.45	27.35	35.65	49.10	34.56	44.54	34.93	46.08	29.95	25.26
1959	26.53	30.97	16.73	35.61	34.22	34.63	30.53	35.61	34.22	31.67	19.37
1964	29.71	33.22	11.81	36.56	23.05	35.65	19.99	36.56	23.05	34.60	16.45
1969	32.73	35.44	8.27	38.14	16.52	37.87	15.70	38.14	16.52	37.64	15.00
1974	31.62	34.02	7.59	37.00	17.01	36.74	16.19	37.00	17.01	36.53	15.52
1979	29.36	31.52	7.35	35.26	20.09	34.47	17.40	35.26	20.09	34.27	16.72
1984	27.61	29.56	7.06	34.2	23.86	33.4	20.97	34.20	23.86	32.99	19.48
1989	26.08	27.86	6.82	33.18	27.22	32.38	24.15	33.18	27.22	31.98	22.62
1994	25.24	26.85	6.37	32.64	29.31	31.84	26.14	32.64	29.31	31.42	24.48

그리고 전체 9개의 그룹을 각 출생코호트별로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대체율의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교육 수준 그룹에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소득대체율의 증가 비율이 높아졌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의 증가율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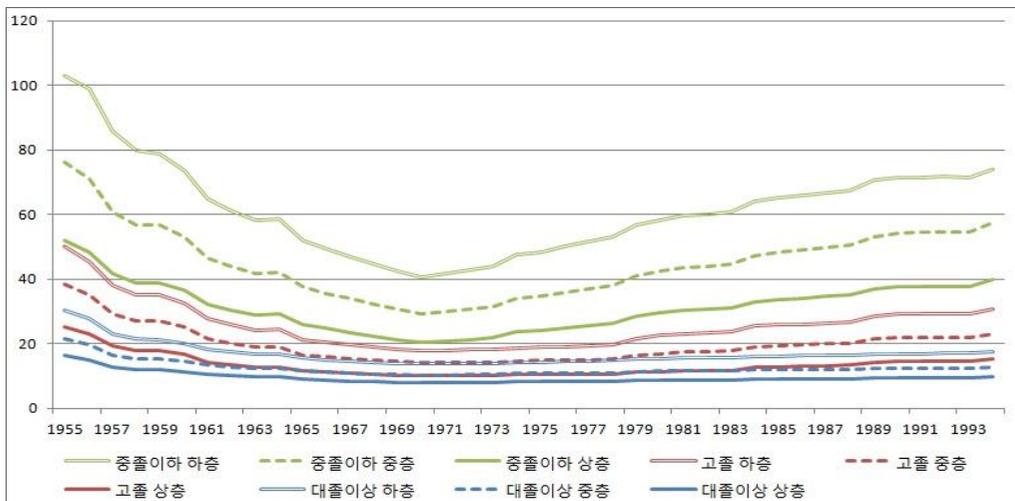
〈표 3-23〉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평균 증가율¹⁾

(단위: %)

출생 연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하층	중층	상층
1955	102.89	76.09	51.76	49.93	38.47	25.22	30.39	21.53	16.23
1959	78.67	56.69	38.77	35.17	27.01	17.93	21.20	15.15	11.85
1964	58.42	42.14	29.22	24.58	18.87	12.74	16.76	12.32	9.63
1969	42.49	30.75	21.23	18.25	14.40	10.22	13.83	10.35	7.89
1974	47.35	34.03	23.59	18.70	14.66	10.40	14.25	10.65	8.11
1979	56.83	41.10	28.61	21.62	16.33	11.06	15.22	11.29	8.58
1984	64.02	47.27	32.89	25.34	19.05	12.50	16.01	11.90	8.97
1989	70.76	53.21	37.06	28.62	21.61	14.26	16.75	12.39	9.39
1994	74.07	57.26	39.69	30.65	23.12	15.38	17.52	12.71	9.63

주: 1) 소득대체율 증가율=(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그림 3-20〕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평균 증가율





제4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제2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4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만30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으로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시점은 2014년 1월 17일이며, 응답자 구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의 응답자 구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연령	만30세-만39세	259	25.9
	만40세-만49세	287	28.7
	만50세-만59세	256	25.6
	만60세 이상	198	19.8
지역	서울	203	20.3
	인천/경기	292	29.2
	대전/충청/세종	100	10.0
	광주/전라	100	10.0
	대구/경북	104	10.4
	부산/울산/경남	160	16.0
	강원/제주	41	4.1

제2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 국민들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및 의견과 2)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및 의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및 의견과 관련된 5개의 문항을 유사점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2개 문항),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1개 문항),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한 의견(2개 문항)의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및 의견 문항의 범주

범주	문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문항2.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항3.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	문항5.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기) :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한 의견	문항6.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 ②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을 포함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문항7.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 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② 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2개 문항)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1개 문항)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금액에 대한 의견(2개 문항)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1.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가. 기술통계량

〈표 4-3〉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29.9%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70.1%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국민들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독립성 검정(χ^2 검정) 결과, 성별과 지역에 따른 ‘예’, ‘아니오’의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28.6%, 여성은 31.2%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라고 답한 비율은 50~59세(41.0%)의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

고 30~39세(22.8%)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라고 답한 비율은 강원/제주(36.6%)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8.0%)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낮았다.

〈표 4-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¹⁾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계(명)	χ^2
전체	29.9	70.1	100.0(1,000)	
성별				0.81
남성	28.6	71.4	100.0(500)	
여성	31.2	68.8	100.0(500)	
연령				28.01***
30~39세	22.8	77.2	100.0(259)	
40~49세	24.0	76.0	100.0(287)	
50~59세	41.0	59.0	100.0(256)	
60~69세	35.2	64.8	100.0(142)	
70~74세	28.6	71.4	100.0(56)	
지역				1.57
서울	28.1	71.9	100.0(203)	
인천/경기	30.5	69.5	100.0(292)	
대전/충청/세종	31.0	69.0	100.0(100)	
광주/전라	28.0	72.0	100.0(100)	
대구/경북	28.8	71.2	100.0(104)	
부산/울산/경남	30.6	69.4	100.0(160)	
강원/제주	36.6	63.4	100.0(41)	

주: 1) 문항2: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2) + p<.10, * p<.05. ** p<.01, *** p<.001

〈표 4-4〉는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6.6%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63.4%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국민들의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독립성 검정

(χ^2 검정) 결과, 성별과 지역에 따른 ‘예’, ‘아니오’의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37.6%, 여성은 35.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라고 답한 비율은 50~59세의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고(46.1%) 30~39세에서 가장 낮았다(32.4%).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라고 답한 비율은 강원/제주(51.2%)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9.0%)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낮았다.

〈표 4-4〉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¹⁾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계(명)	χ^2
전체	36.6	63.4	100.0(1,000)	
성별				0.43
남성	37.6	62.4	100.0(500)	
여성	35.6	64.4	100.0(500)	
연령				13.69**
30~39세	32.4	67.6	100.0(259)	
40~49세	33.1	66.9	100.0(287)	
50~59세	46.1	53.9	100.0(256)	
60~69세	35.2	64.8	100.0(142)	
70~74세	33.9	66.1	100.0(56)	
지역				10.00
서울	39.9	60.1	100.0(203)	
인천/경기	38.7	61.3	100.0(292)	
대전/충청/세종	37.0	63.0	100.0(100)	
광주/전라	29.0	71.0	100.0(100)	
대구/경북	32.7	67.3	100.0(104)	
부산/울산/경남	31.9	68.1	100.0(160)	
강원/제주	51.2	48.8	100.0(41)	

주: 1) 문항3: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 p<.10, * p<.05, ** p<.01, *** p<.001

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 분석

〈표 4-5〉는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1로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50~59세와 60~69세인 응답자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30~39세의 응답자보다 각각 2.36배($p < .001$), 88%($p < .01$) 높았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증가시켰고($p < .001$) 지역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p = .947$).

〈표 4-5〉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 2)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남성 (기준: 여성)	-0.14	0.14	0.87
40~49세 (기준: 30~39세)	0.07	0.20	1.07
50~59세	0.86***	0.20	2.36
60~69세	0.63**	0.23	1.88
70~74세	0.32	0.33	1.38
인천/경기 (기준: 서울)	0.13	0.20	1.14
대전/충청/세종	0.13	0.27	1.14
광주/전라	-0.02	0.28	0.98
대구/경북	0.01	0.27	1.01
부산/울산/경남	0.09	0.24	1.10
강원/제주	0.39	0.37	1.48
상수항	-1.24***	0.21	
Log-likelihood		-595	
Wald chi-square		29.81**	
N		1,000	

주: 1) 문항2: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5〉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분석결과에서 50~69세의 응답자의 '예'의 응답비율이 30~49세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연금수급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대가 연금제도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6〉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50~59세인 응답자가 문항3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30~39세의 응답자보다 82%($p < .01$) 높았다. 또한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문항3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39%, 31% 낮았다. 그러나 이 영향은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증가시켰고($p < .01$) 지역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p = .119$).

이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5〉의 분석결과처럼 50~69세의 '예'의 응답비율이 30~39세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연금수급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대가 연금제도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6〉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남성 (기준: 여성)	0.09	0.13	1.09
40~49세 (기준: 30~39세)	0.04	0.19	1.04
50~59세	0.60**	0.18	1.82
60~69세	0.16	0.22	1.17
70~74세	0.10	0.31	1.11
인천/경기 (기준: 서울)	-0.05	0.19	0.95
대전/충청/세종	-0.13	0.25	0.88
광주/전라	-0.49+	0.27	0.61
대구/경북	-0.33	0.26	0.72
부산/울산/경남	-0.37+	0.22	0.69
강원/제주	0.45	0.34	1.56
상수항	-0.65***	0.19	
Log-likelihood		-645	
Wald chi-square		23.35*	
N		1,000	

주: 1) 문항3: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 p<.10, * p<.05. ** p<.01, *** p<.001

2.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

가. 기술통계량

〈표 4-7〉은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가) :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28.3%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71.7%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국민들의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독립성 검정(χ^2 검정) 결과, 연령과 지역에 따른 ‘예’, ‘아니오’의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22.0%가 증세에 찬성했지만 여성은 34.6%가 증세에 찬성했다.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라고 답한 비율은 50~59세(32.0%)의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고 30~39세(24.3%)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라고 답한 비율은 서울(32.5%)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19.5%)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낮았다.

〈표 4-7〉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¹⁾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계(명)	χ^2
전체	28.3	71.7	100.0(1,000)	
성별				
남성	22.0	78.0	100.0(500)	19.56***
여성	34.6	65.4	100.0(500)	
연령				
30~39세	24.3	75.7	100.0(259)	5.154
40~49세	26.5	73.5	100.0(287)	
50~59세	32.0	68.0	100.0(256)	
60~69세	31.0	69.0	100.0(142)	
70~74세	32.1	67.9	100.0(56)	
지역				
서울	32.5	67.5	100.0(203)	4.829
인천/경기	27.1	72.9	100.0(292)	
대전/충청/세종	25.0	75.0	100.0(100)	
광주/전라	32.0	68.0	100.0(100)	
대구/경북	27.9	72.1	100.0(104)	
부산/울산/경남	27.5	72.5	100.0(160)	
강원/제주	19.5	80.5	100.0(41)	

주: 1) 문항5: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 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가):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 변화 분석

〈표 4-8〉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인 응답자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여성인 응답자보다 48%($p < .001$) 낮았다. 그리고 50-59세인 응답자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30-39세인 응답자보다 1.50배 높았다. 또한 강원/제주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문항5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51% 낮았다. 그러나 이 영향은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과 지역은 모두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각각 $p = 2.225$, $p = .549$).

이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에 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연금수급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한 증세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더 적기 때문일 수 있다.

〈표 4-8〉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남성 (기준: 여성)	-0.65***	0.14	0.52
40~49세 (기준: 30~39세)	0.12	0.20	1.13
50~59세	0.40*	0.20	1.50
60~69세	0.36	0.24	1.43
70~74세	0.43	0.32	1.54
인천/경기 (기준: 서울)	-0.27	0.20	0.76
대전/충청/세종	-0.40	0.28	0.67
광주/전라	-0.05	0.27	0.95
대구/경북	-0.24	0.27	0.78
부산/울산/경남	-0.27	0.23	0.76
강원/제주	-0.72+	0.44	0.49
상수항	-0.63**	0.20	
Log-likelihood		-580	
Wald chi-square		28.57**	
N		1,000	

주: 1) 문항5: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 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가):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 변화 분석

아래의 〈표 4-9〉는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4-8〉에 더해서, 기초연금 이해도 문항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는 모두 '예'의 응답은 1로 '아니오'의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

에 대한 이해도(문항2)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2.15배 높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의 응답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의 응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9〉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문항2 ²⁾	0.76***	0.16	2.15
문항3 ³⁾	0.18	0.16	1.20
남성 (기준: 여성)	-0.65***	0.15	0.52
40~49세 (기준: 30~39세)	0.10	0.20	1.11
50~59세	0.23	0.20	1.26
60~69세	0.24	0.24	1.28
70~74세	0.38	0.34	1.46
인천/경기 (기준: 서울)	-0.31	0.21	0.73
대전/충청/세종	-0.43	0.28	0.65
광주/전라	-0.03	0.27	0.97
대구/경북	-0.24	0.27	0.78
부산/울산/경남	-0.27	0.24	0.76
강원/제주	-0.84	0.43	0.43
상수항	-0.87+	0.21	
Log-likelihood		-565	
Wald chi-square		58.34***	
N		1,000	

주: 1) 문항5: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 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가) :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문항2: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3) 문항3: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 p<.10, * p<.05. ** p<.01, *** p<.001

이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 비록 기초연금 이해도와 관련된 한 개의 문항만이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결과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한 의견

가. 기술통계량

아래의 <표 4-10>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28.3%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이라고 대답하였고 71.7%는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대상’이라고 대답하여, 국민들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으로 ‘모든 노인’보다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정(χ^2 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과 지역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85.2%, 여성은 79.8%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을 선택하였다.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을 선택한 비율은 70~74세(89.3%)가 가장 높았

고 30~39세(79.5%)가 가장 낮았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을 선택한 비율은 강원/제주가 가장 높았고(87.8%) 광주/전라(69.0%)가 가장 낮았다.

〈표 4-10〉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¹⁾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단위: %)

구분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 노인	계(명)	χ^2
전체		82.5	17.5	100.0(1,000)	
성별	남성	85.2	14.8	100.0(500)	5.05*
	여성	79.8	20.2	100.0(500)	
연령	30~39세	79.5	20.5	100.0(259)	7.22
	40~49세	79.8	20.2	100.0(287)	
	50~59세	85.2	14.8	100.0(256)	
	60~69세	85.9	14.1	100.0(142)	
	70~74세	89.3	10.7	100.0(56)	
지역	서울	83.7	16.3	100.0(203)	18.13**
	인천/경기	85.6	14.4	100.0(292)	
	대전/충청/세종	78.0	22.0	100.0(100)	
	광주/전라	69.0	31.0	100.0(100)	
	대구/경북	81.7	28.3	100.0(104)	
	부산/울산/경남	85.6	14.4	100.0(160)	
	강원/제주	87.8	12.2	100.0(41)	

주: 1) 문항6: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 p<.10, * p<.05, ** p<.01, *** p<.001

아래의 〈표 4-11〉은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2.4%는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이라고 대답하였고 27.6%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라고 대답하여, 국민들은 기초연금의 수급액으로 ‘정액

지급'보다는 '차등 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정(χ^2 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과 지역에 따른 응답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대한 의견(문항7)의 응답과의 독립성은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74.8%, 여성은 70.0%가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을 선택하였다.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을 선택한 비율은 60~69세(80.3%)가 가장 높았고 30~39세(68.0%)가 가장 낮았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을 선택한 비율은 부산/울산/경남(75.6%)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57.0%)가 가장 낮았다.

〈표 4-11〉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¹⁾의 응답에 따른 기술통계량

(단위: %)

구분		차등지급	정액지급	계(명)	χ^2
전체		72.4	27.6	100.0(1,000)	
성별	남성	74.8	25.2	100.0(500)	2.88+
	여성	70.0	30.0	100.0(500)	
연령	30~39세	68.0	32.0	100.0(259)	7.66
	40~49세	71.4	28.6	100.0(287)	
	50~59세	72.7	27.3	100.0(256)	
	60~69세	80.3	19.7	100.0(142)	
	70~74세	76.8	23.2	100.0(56)	
지역	서울	70.9	29.1	100.0(203)	14.93*
	인천/경기	75.3	24.7	100.0(292)	
	대전/충청/세종	75.0	25.0	100.0(100)	
	광주/전라	57.0	43.0	100.0(100)	
	대구/경북	75.0	25.0	100.0(104)	
	부산/울산/경남	75.6	24.4	100.0(160)	
	강원/제주	70.7	29.3	100.0(41)	

주: 1) 문항7: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한 의견 변화 분석

아래의 <표 4-12>는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에 대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대상’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인 응답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라고 응답할 확률이 여성인 응답자보다 44% 높았다($p < .05$). 그리고 50~59세, 60~69세, 70~74세인 응답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라고 응답할 확률이 30-39세인 응답자보다 각각 49%, 63%, 2.31배 높았다. 그러나 이 영향은 모두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광주/전라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문항6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라고 응답할 확률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58% 낮았다($p < .01$).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고($p < .10$) 지역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p < .01$).

이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해 ‘전체 노인’보다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전체 노인’보다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2〉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¹⁾의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남성 (기준: 여성)	0.37*	0.17	1.44
40~49세 (기준: 30~39세)	0.02	0.22	1.02
50~59세	0.40+	0.24	1.49
60~69세	0.49+	0.29	1.63
70~74세	0.84+	0.47	2.31
인천/경기 (기준: 서울)	0.17	0.25	1.18
대전/충청/세종	-0.38	0.31	0.68
광주/전라	-0.87**	0.29	0.42
대구/경북	-0.16	0.32	0.85
부산/울산/경남	0.14	0.30	1.15
강원/제주	0.36	0.51	1.43
상수항	1.26***	0.26	
Log-likelihood		-449	
Wald chi-square		29.99**	
N		1,000	

주: 1) 문항6: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아래의 〈표 4-13〉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태도(문항7)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태도(문항7)에 대해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1로 코딩하였고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라고 응답하였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60~69세인 응답자가 문항7에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30~39세인 응답자보다 97% 높았다

($p < .01$). 또한 광주/전라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문항7에 ‘대상자별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라고 응답할 확률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47% 낮았다($p < .05$).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고($p < .10$) 지역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증가시켰다($p < .05$).

이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정액 지급’보다는 ‘차등 지급’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기초연금의 수급액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3〉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태도(문항7)¹⁾의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남성 (기준: 여성)	0.23	0.14	1.26
40~49세 (기준: 30~39세)	0.17	0.19	1.18
50~59세	0.23	0.20	1.25
60~69세	0.68***	0.25	1.97
70~74세	0.48	0.34	1.62
인천/경기 (기준: 서울)	0.25	0.21	1.28
대전/충청/세종	0.21	0.28	1.23
광주/전라	-0.64*	0.26	0.53
대구/경북	0.19	0.28	1.21
부산/울산/경남	0.23	0.24	1.26
강원/제주	0.02	0.38	1.02
상수항	0.56***	0.21	
Log-likelihood	-576		
Wald chi-square	25.15**		
N	1,000		

주: 1) 문항7: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한 의견 변화 분석

아래의 <표 4-14>는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4-12>에 더해서, 기초연금 이해도 문항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은 모두 ‘예’의 응답은 1로 ‘아니오’의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29% 낮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의 응답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의 응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응답자일수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하위 70% 노인’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기초연금 이해도와 관련된 한 개의 문항만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결과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4〉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액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문항2 ²⁾	-0.35+	0.20	0.71
문항3 ³⁾	0.22	0.19	1.24
남성 (기준: 여성)	0.36*	0.17	1.43
40~49세 (기준: 30~39세)	0.02	0.22	1.02
50~59세	0.44+	0.24	1.56
60~69세	0.54+	0.29	1.72
70~74세	0.86+	0.47	2.36
인천/경기 (기준: 서울)	0.19	0.25	1.21
대전/충청/세종	-0.36	0.31	0.70
광주/전라	-0.85***	0.29	0.43
대구/경북	-0.14	0.32	0.87
부산/울산/경남	0.17	0.30	1.18
강원/제주	0.36	0.51	1.44
상수항	1.26***	0.26	
Log-likelihood	-447		
Wald chi-square	32.93**		
N	1,000		

주: 1) 문항6: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문항2: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3) 문항3: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 p<.10, * p<.05. ** p<.01, *** p<.001

아래의 〈표 4-15〉는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액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4-13〉에 더해서, 기초연금 이해도 문항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은 모두 ‘예’의 응답은 1로 ‘아니오’의 응답은 0으로

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문항2)와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문항3)의 응답은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의 응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적어도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와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의 연관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문항2 ²⁾	-0.28	0.17	0.76
문항3 ³⁾	0.19	0.16	1.21
남성 (기준: 여성)	0.22	0.14	1.25
40~49세 (기준: 30~39세)	0.17	0.19	1.18
50~59세	0.25	0.20	1.29
60~69세	0.72**	0.25	2.05
70~74세	0.50	0.34	1.65
인천/경기 (기준: 서울)	0.26	0.21	1.29
대전/충청/세종	0.22	0.28	1.25
광주/전라	-0.62*	0.26	0.54
대구/경북	0.21	0.28	1.23
부산/울산/경남	0.26	0.24	1.29
강원/제주	0.02	0.38	1.02
상수항	0.55**	0.21	
Log-likelihood	-575		
Wald chi-square	27.75**		
N	1,000		

주: 1) 문항7: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문항2: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3) 문항3: 귀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 p<.10, * p<.05, ** p<.01, *** p<.001

라.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한 의견 변화 분석

아래의 <표 4-16>은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4-12>에 더해서,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는 ‘예’의 응답은 1로 ‘아니오’의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 대상’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41% 낮았다($p < .01$).

이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더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전체 노인’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6〉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문항5 ²⁾	-0.52**	0.18	0.59
남성 (기준: 여성)	0.30+	0.17	1.35
40~49세 (기준: 30~39세)	0.03	0.22	1.03
50~59세	0.45+	0.24	1.57
60~69세	0.53+	0.29	1.70
70~74세	0.89+	0.47	2.43
인천/경기 (기준: 서울)	0.14	0.25	1.15
대전/충청/세종	-0.43	0.31	0.65
광주/전라	-0.89	0.29	0.41
대구/경북	-0.19	0.32	0.83
부산/울산/경남	0.11	0.30	1.12
강원/제주	0.29	0.51	1.33
상수항	1.46***	0.26	
Log-likelihood	-445		
Wald chi-square	37.15***		
N	1,000		

주: 1) 문항6: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문항5: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가):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아래의 〈표 4-17〉은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4-13〉에 더해서,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는 '예'의 응답은 1로 '아니오'의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문항5)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문항7에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증세에 대한 동의여

부(문항5)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57% 낮았다($p < .001$).

이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더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수급액과 관련하여 ‘정액 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7〉 성별, 연령, 지역,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¹⁾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robust)	odds ratio
문항5 ²⁾	-0.85***	0.15	0.43
남성 (기준: 여성)	0.12	0.15	1.13
40~49세 (기준: 30~39세)	0.19	0.19	1.21
50~59세	0.31	0.20	1.36
60~69세	0.76**	0.26	2.15
70~74세	0.58	0.35	1.78
인천/경기 (기준: 서울)	0.20	0.21	1.23
대전/충청/세종	0.14	0.29	1.15
광주/전라	-0.67*	0.26	0.51
대구/경북	0.16	0.28	1.17
부산/울산/경남	0.19	0.25	1.21
강원/제주	-0.10	0.38	0.90
상수항	0.88***	0.21	
Log-likelihood	-562		
Wald chi-square	50.18***		
N	1,000		

주: 1) 문항7: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문항5: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정부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생산가능인구 1인당 추가(경상가) : '15년 1만원, '40년 41만원, '60년 163만원). 귀하는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과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 간의 독립성 검정

아래의 <표 4-18>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과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 간의 독립성 검정(χ^2 검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으로 '차등지급'에 찬성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7.2%),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으로 '전체 노인'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으로 '차등지급'에 찬성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5.2%).

<표 4-18>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의견(문항6)¹⁾과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의견(문항7)²⁾의 독립성 검정

(단위: 명)

n=1,000		수급액(문항7)		χ^2
		차등지급	정액지급	
수급대상 (문항6)	소득 하위 70% 노인	672 (67.2%)	153 (15.3%)	193.42***
	전체 노인	52 (5.2%)	123 (12.3%)	

주: 1) 문항6: 기초연금을 드린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모든 분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문항7: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모든 분께 20만원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액 수준을 예상해 보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증가 정도를 현 세대 기준으로 분석해보았다. 현 노인세대의 경우 20년 이상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하더라도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수급 받게 될 비중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8%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일수록 기초연금액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에 반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두 연금액을 합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감소효과는 상쇄되어 오히려 두 연금액의 합은 증가하게 된다.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통계표에 따른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해본 결과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의 크기는 약 25만원 정도였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해 본 결과 평균 약 12%로 매우 낮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적으로 44만원 정도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평균 20%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였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현 노인세대에게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만을 수급했을 때 보다 소득대체율이 평균 89%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두 연금의 합은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2,168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앞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연금 모두의 절대적 가치 및 두 연금으로 인한 노후소득 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두 제도 모두의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래세대의 기초연금에 대하여도 산출해 보았다. 현 노인세대를 제외한 2014년 기준 20~50대에 대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출생코호트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예측해 본 결과 1955년생에서 1970년생까지는 교육수준, 소득계층 상관없이 가입기간이 증가하다 그 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고학력일수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득계층별로 보았을 때도 역시 상층으로 갈수록 가입기간이 가장 길게 예측되었다. 현 세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또한 동일한 패턴으로 증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산출 후 기초연금을 산출해 보았는데, 이때 기준연금액에 대한 총 5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초연금 수준을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로만 기준연금액을 증가시킬 경우가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다른 4가지의 시나리오들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증가, 감소 패턴과 유사하게 70년대 생까지 기초연금이 감소하다 그 후 미래세대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비교해본 결과 출생코호트별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소득계층별로 보았을 때 모든 교육수준별 그룹의 하층 그룹의 소득대체율이 약 50%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으로 인한 노후 소득

안정 효과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예상되어졌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연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계층에게는 현재 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연금 소득이 점점 높아지게 될 미래세대에게는 적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산정될 기초연금은 원래의 취지대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며,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하여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성호·권혁진·조영은(201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강성호·최옥금(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pp.43-71.
- 국민연금공단(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2012, 25.
- 김원섭·김수완·주은선·최영준(2006).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김재호·정주연(2012).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1), pp.421-446.
- 김태성·김진수(2007). 사회보장론. 서울:청목출판사.
- 김태은(2013).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6, pp.53-61.
- 보건복지부(2013).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우해봉(2012).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서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유호선(2013).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의 분석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4).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용하(2001). 기초연금제도의 구상과 문제점. 사회복지정책, 12, pp.327-358.
- 장현주(201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현대사회와 행정, 23(2), pp.121-146.
- 최기흥·한정림(2013).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영준·김진욱(2012). OECD 복지국가에서 공공부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 고용노동부(201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한정림·우해봉(2014).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성별 및 출생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pp.1-31.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Paris: OECD.

OECD(2014). OECD Economic Outlook NO.95 - OECD Annual Projections.

보건복지부. (2014. 6. 20),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basicpension.mw.go.kr> 에서 2014.6.20 인출.

MISSOC (<http://www.missoc.org>)

부록 <<

부록: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시 사용한 데이터와 산출 결과

〈부표 1〉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그룹에 대한 월급여
총액 통계

(단위: 원)

연령	중졸 이하 (하층)	중졸 이하 (중층)	중졸 이하 (상층)
20세	920,826	1,316,691	2,303,000
22세	912,692	1,471,427	2,167,505
24세	971,160	1,526,957	2,321,116
26세	949,531	1,512,031	2,331,209
28세	899,342	1,543,716	2,190,589
30세	949,109	1,562,856	2,452,526
32세	656,406	1,549,976	2,328,463
34세	930,573	1,577,035	2,483,701
36세	1,004,877	1,562,389	2,615,086
38세	855,227	1,634,439	2,852,968
40세	820,393	1,588,261	2,674,920
42세	864,485	1,587,263	2,749,419
44세	801,793	1,525,138	3,286,388
46세	921,039	1,514,828	2,983,364
48세	938,296	1,556,003	2,896,570
50세	862,162	1,517,199	2,933,545
52세	871,752	1,531,983	2,940,374
54세	844,432	1,518,884	3,004,573
56세	912,276	1,526,740	3,094,868
58세	882,598	1,497,431	2,936,921

〈부표 2〉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의 교육수준 고졸 그룹에 대한 월급여 총액 통계

(단위: 원)

	고졸 (하층)	고졸 (중층)	고졸 (상층)
20	1,014,211	1,838,581	2,752,288
22	1,098,327	1,832,772	2,995,487
24	1,114,234	1,832,445	2,704,051
26	1,147,788	1,856,992	3,001,019
28	1,158,727	1,870,794	2,910,384
30	1,160,992	1,902,110	2,956,260
32	1,169,470	1,913,172	3,045,498
34	1,130,625	1,951,507	3,132,609
36	1,135,296	1,922,738	3,146,655
38	1,114,235	1,900,134	3,248,641
40	1,105,388	1,900,981	3,353,170
42	1,101,348	1,884,701	3,449,571
44	1,118,632	1,875,485	3,576,645
46	1,091,955	1,872,478	3,578,037
48	1,102,014	1,878,791	3,645,190
50	1,094,593	1,865,486	3,651,915
52	1,072,061	1,876,694	3,721,870
54	1,075,570	1,868,889	3,672,693
56	1,060,749	1,866,659	3,688,796
58	1,062,140	1,840,361	3,605,902

〈부표 3〉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중졸 이하 그룹)¹⁾

(단위: 원, %)

출생 연도	하층			중층			상층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955	970,154	252,984	26.07	1,681,564	322,954	19.20	3,103,360	458,247	14.76
1959	970,722	277,726	28.61	1,682,752	354,866	21.08	3,031,447	497,604	16.41
1964	973,851	307,369	31.56	1,683,029	392,706	23.33	2,942,103	542,331	18.43
1969	977,723	335,456	34.30	1,670,131	426,974	25.56	2,872,994	584,466	20.34
1974	974,764	317,092	32.53	1,670,969	405,248	24.25	2,870,137	556,603	19.39
1979	974,274	286,032	29.35	1,672,024	367,192	21.96	2,878,077	507,950	17.64
1984	973,852	262,948	27.00	1,671,305	338,003	20.22	2,885,486	469,547	16.27
1989	973,946	244,152	25.06	1,672,376	313,423	18.74	2,891,854	435,600	15.06
1994	974,054	235,676	24.19	1,607,674	290,744	18.08	2,780,844	404,121	14.53

주: 1) 표의 결과는 2014년 실질가치기준으로 환산한 현재가치이며, 이때 할인율로 A값 재평가율을 사용하였음.

130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부표 4〉 201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대졸 이상 그룹)¹⁾

(단위: 원, %)

출생 연도	하층			중층			상층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955	1,517,454	512,921	33.80	2,901,177	709,579	24.45	3,980,000	895,381	22.49
1959	1,541,793	573,240	37.18	2,880,522	786,727	27.31	3,980,000	997,670	25.06
1964	1,558,212	643,865	41.32	2,844,784	875,679	30.78	3,980,000	1,119,254	28.12
1969	1,481,076	694,092	46.86	2,642,878	926,872	35.07	3,893,550	1,216,936	31.25
1974	1,451,466	663,354	45.70	2,585,424	886,642	34.29	3,805,976	1,164,775	30.60
1979	1,451,407	614,173	42.31	2,587,217	826,632	31.95	3,808,149	1,090,520	28.63
1984	1,451,760	577,385	39.77	2,587,345	779,282	30.11	3,808,443	1,029,994	27.04
1989	1,452,254	547,860	37.72	2,587,941	739,422	28.57	3,809,785	977,410	25.65
1994	1,451,244	531,158	36.60	2,585,416	716,689	27.72	3,805,994	947,263	24.88

주: 1) 표의 결과는 2014년 실질가치기준으로 환산한 현재가치이며, 이때 할인율로 A값 재평가율을 사용하였음.